

월간

재정포럼

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1월호 제163호

현안분석

-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 김현아
- 포이즌필(Poison Pill)의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그에 따른 조세문제 / 김진수

정책토론투리포트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주요국 조세동향

- 미국 주택구입 세액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 연장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첫째도 둘째도 투자 활성화이다 · 최 광
현안분석	06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 김현아
	28 포이즌필(Poison Pill)의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그에 따른 조세문제 · 김진수
정책토론포트	47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주요국 조세동향	61 미국 주택구입 세액공제 및 결혼금 소급공제 연장 외
정책흐름	77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
	84 2010년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
	91 2010년 예산 배정계획 및 집행지침 확정, 통보
	95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109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 1. 1 시행
	113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재정통계	116 전화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120 임투공제 일몰, '반쪽짜리 연장' 외

첫째도 둘째도 투자 활성화이다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3년까지만 해도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10대 경제 강국 진입을 눈앞에 뒀다고 여겼던 한국경제가 5년 새 4단계나 하락해 2008년에 15위를 기록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IMF는 한국경제가 2010년에는 세계 16위까지 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N회원국이 210여 나라이니 경제의 총규모가 세계 16위권으로 밀려도 총규모 지표로 볼 때 우리의 국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인데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50위권 안팎에 불과해 G20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목표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G20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목표의 달성을 요원하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소득 수준을 크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조건인데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계속 후퇴하고 있다. 지난 두 정권의 최대의 실책은 투자 하락을 방조한 점에 있다. 현 정부에 와서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질GDP 대비 실질설비투자 비중이 1991~1997년 동안 연평균 13.9%에서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9.6%로 크게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0%, 10.8%씩 감소했다.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기업이 금융기관에 맡기는 저축성 예금이 최근 31.5%나 크게 증가한 반면 실질설비투자는 1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투자지표와는 대조적으로 경쟁국들의 경우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몰려들고 있으며 시설투자가 날로 증대하여 성장잠재력이 계속 확충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 성장기반 확충, 고용 창출을 외치면서 기업의 시설투자 부진을 방치한 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업 설비투자의 계속적 부진으로 성장의 기반이 계속 하락하는 데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

다.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는 물론 세계의 우량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운을 건 결단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적 위상과 소득 수준을 크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선순환(善循環)시키는 첩경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이 발흥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 확대는 저절로 가능해진다.

정부도 투자 부진의 문제를 인식은 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인식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내용도 미사여구(美辭麗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책의 발표는 있으나 끝까지 챙기는 책임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함량 미달이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으며, 정치권으로부터는 계속 헛방질이 나온다. 정치권과 정부는 재계가 규제완화와 사면 등 정부로부터 선 물만 잔뜩 챙기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먹튀’ 행각을 보인다고 불평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구호로 전봇대 몇 개 뽑고, 사면 선심을 베풀고, 재벌 총수를 불러 ‘공격적 경영’을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해서 기업이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는 투자를 쉽게 할리가 없다.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렵지 않다. 기본에 충실하고, 잘하고 있는 나라의 경험에서 배우면 된다. 최근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도 그 배경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외국 기업과 기술의 유치에 성공하여 투자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없다. 투자는 기업이 한다. 기업이 원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투자를 한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맞추자. 국내의 자금이 국내에 머물고 더 나아가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마음껏 투자되도록 여건을 확실히 만들자. 설비투자의 활성화와 외국 자본과 기술의 국내 유입은 나라 전체가 경제 특구화가 되면 가능하다. 잘 나가는 나라는 나라 전체가 경제특구인데 우리는 몇몇 지역에 특구를 만들어 놓고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구와 다름이 없다. 정치적 요인과 반(反)기업 정서가 그 특구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해외 우량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저히 사업할 풍토가 아니라며 떠나는 기업들을 잡아야 한다. 외형적·양적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포춘

.....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맞추자. 국내의 자금이 국내에 머물고 더 나아가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마음껏 투자 되도록 여건을 확실히 만들자.
.....

.....
 정부가 일을 많이 하기
 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경제정책을
 통한, 국가경영은 ‘올바른
 일을 하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책을
 잘 하는 것이 아니다.

.....

(Fortunes) 500대 기업 모두가 앞다퉀 투자하고 싶어 하는 여건을 가진 나라
 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지 등 기술적 유인 제공도 중요하나 국내·외 투자
 가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부
 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오늘날의 경제·사회·정치 등 모든 분야가 전
 문가의 눈에도 너무 복잡해졌고 그 움직이는 속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
 로 빨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원의 공간 개념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민간부문을 자신의 이익과 논리를 앞세우는 관료와 정치가가 주체인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 만능인 곳에 투자자는 꼬리를 틀지 않
 는다.

정부가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경제정책을 통
 한, 국가경영은 ‘올바른 일을 하며’ (doing the right thing), ‘일을 제대로 하는
 것’ (doing things right)을 뜻한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책을 잘 하는 것
 이 아니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도 참으로 일사분란하게 해치우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별화를 시도하며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호가 난무하면 투자자들은 식상해 하고 기업하려는 의지 자체와
 기업의 투자의욕은 오히려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 번창의 길을 놓고 선각자들이 내놓은 수많은 처
 방의 핵심은 ‘제도와 지식’이다. 훌륭한 제도와 지식의 핵심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정신인데 우리의 경우 반자본주의적, 반시장적 정책이 아직
 도 팽배하며 반자유주의 정신이 풍미하고 있다. 반듯한 지도자, 올바른 의식,
 훌륭한 제도의 확립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전대미문
 (前代未聞)의 무한경쟁 시대에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사업
 을 하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포이즌필(Poison Pill)의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그에 따른 조세문제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hyuna@kipf.re.kr)

최근 들어 주요국의
보조금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 서론

중앙정부는 증가하는 지방정부의 세출지원을 위하여 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세원이양이 가장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원이양은 세원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과 이를 위한 재정조정 어려움, 정치적인 부담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재정이전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재정수요 발생시 보조금을 통한 재정이전 방식은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정분권 수단이다. 최근 들어 주요국의 보조금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보조금(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약 53조원에 달한다¹⁾. 지방세가 47조원대임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상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보조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정책은 정부간 재정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에 해당하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주요 이전재원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은 '일반보조금' 과 '조건부보조금'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보조금은 대표적인 지역간 재정 형평화 수단이며,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있다. 조건부보조금의 경우,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국고보조금' 이 이에 해당한다.

1) 2009년 당초예산 기준이며, 일반회계 세입순계 규모는 47.8조원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규모는 53조원에 달한다(2009년도 자치단체 예산개요).

지금까지의 보조금 관련 연구 내용이나 정책적 관심은 각각의 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미시적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보조금의 선택(일반보조금 vs 조건부보조금)’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1990년대 이후 주요 국가에서 조건부보조금(earmarked grant 혹은 matching grant)이 일반보조금화하고 있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Blochliker and King 2006), European Charter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조건부보조금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견해 정도이다²⁾. 이론적으로나, OECD/EU와 같은 국제기구 등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인 일반보조금이 더욱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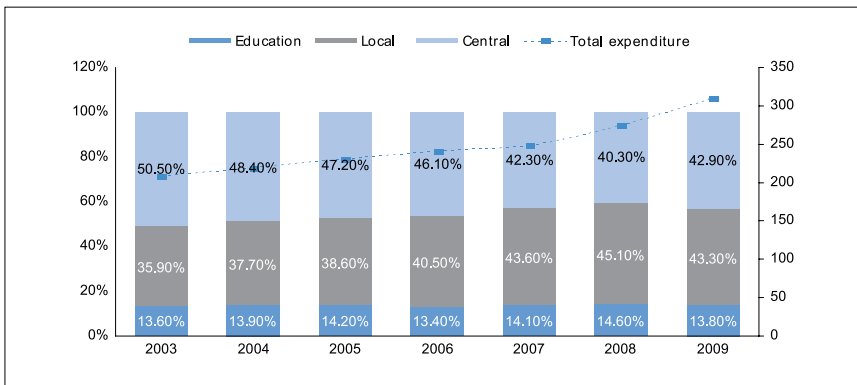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건부보조금을 통한 지방재정 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Bergvall et al. 2006), 특히, 2009년 캐나다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패키지(stimulus package)로 도입된 기반시설 관련 보조금의 경우 조건부보조금으로 실행된 점 등 조건부보조금의 정책적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noddon and Hobson 2009). 따라서, 이 글은 증가하고 있는 조건부보조금의 추세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전 재원 지원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보조금 선택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의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나, OECD/EU와 같은 국제기구 등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인 일반보조금이 더욱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I. 보조금 증가를 통한 지방재정 규모 증가

[그림 1] 정부간 재정(예산)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주: 지방정부는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2009 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2) Article 9 paragraph 7 th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 "As far as possible, grants to local authorities shall not be earmarked for the financing of specific projects. The provision of grants shall not remove basic freedom of local authorities to exercise policy discretion within their own jurisdiction".

이전재원 규모 증가에
비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꾸준히 20%대를 유지함으로써
세원이양에 있어서는
경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조금을 통한 지방재정 규모 확장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규모는 2009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137조원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정부 규모 중 43.3%에 해당한다. 2003년 35.9%에서 2008년 45.1%까지 증가하는 지방재정의 규모는, 감소하는 중앙정부 예산을 흡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전재원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총정부지출 대비 의존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재원 규모 증가에 비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꾸준히 20%대를 유지함으로써 세원이양에 있어서는 경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총정부지출 대비 의존재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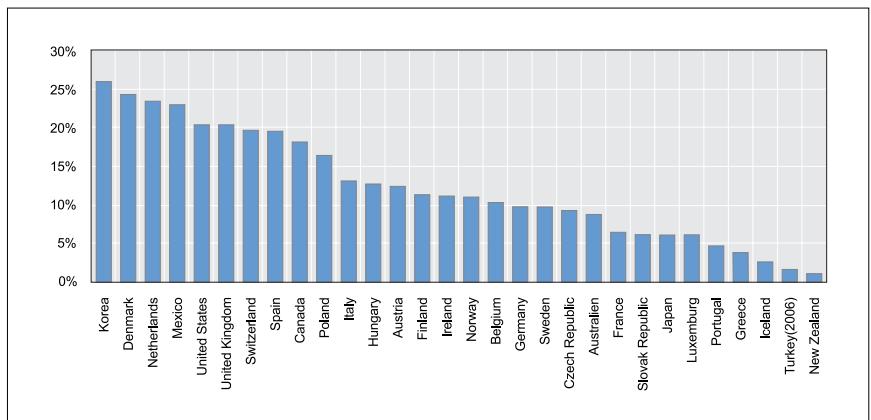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부지출(A)	247	260	277	289	320	355
의존재원(B)	50	61	67	73	87	83
의존재원비중(B/A)	20.3	23.3	24.1	25.4	27.1	23.4

주: 자치단체예산개요(2009)의 정부예산기준임, 2007년까지 결산, 2008년 최종예산, 2009년 당초예산 기준임.
 정부지출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교육재정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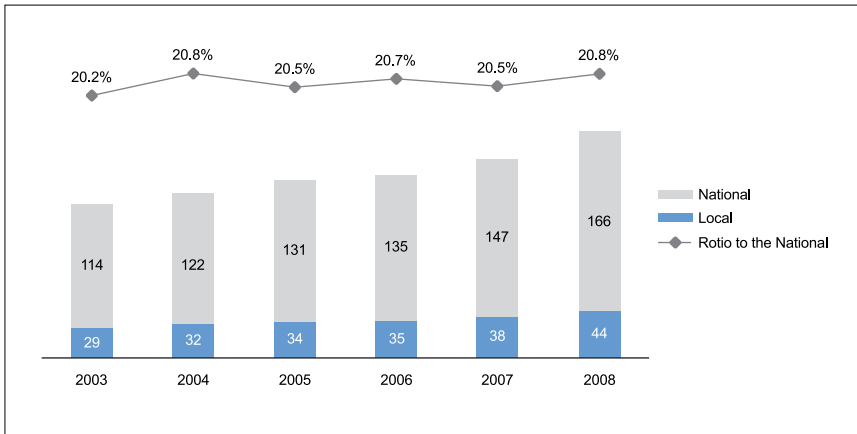
[그림 2] 2005년 기준 총정부지출 대비 이전재원 규모

(Transfer to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2005)



자료: OECD (2009), Figure 1, p. 2

[그림 3] 국세 대비 지방세수 비율



자료: OECD (2009), Figure 1, p.2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을 의미하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약 110조원 정도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각각 26.5조원, 21.2조원 규모이다.

III. 우리나라 보조금의 종류 및 평가

가. 보조금 종류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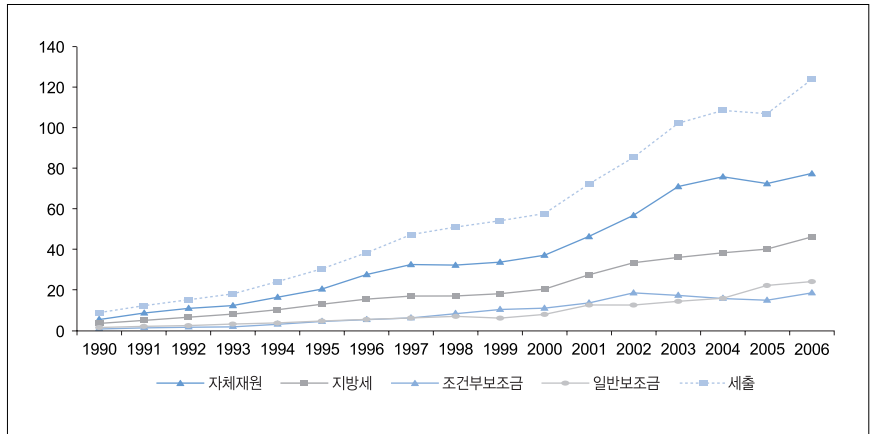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을 의미하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약 110조원 정도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각각 26.5조원(24.0%), 21.2조원(19.0%) 규모이다³⁾. 1990년부터 외환위기까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거의 같은 규모로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고, 2000년 이후 기초생보 등의 법정사업 증가로 인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5년 이후에는 지방교부세율의 증가, 지방양여금의 교부세로의 이관, 분권 교부세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규모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전재원 및 지방세 등은 경기 변화에 따른 변동보다는 국고보조금 개편,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증감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적 변수에 의해서 더욱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이전재원의 GDP 대비 탄력성은 4.9에 달하고, 2002년 지방세탄력성의 경우 1.8 규모이다.

3) 당초예산 기준, 자치단체 예산개요 2009.

이전재원 및 지방세 등은 경기 변화에 따른 변동보다는 국고보조금 개편, 부동산 정책 등 정책적 변수에 의해서 더욱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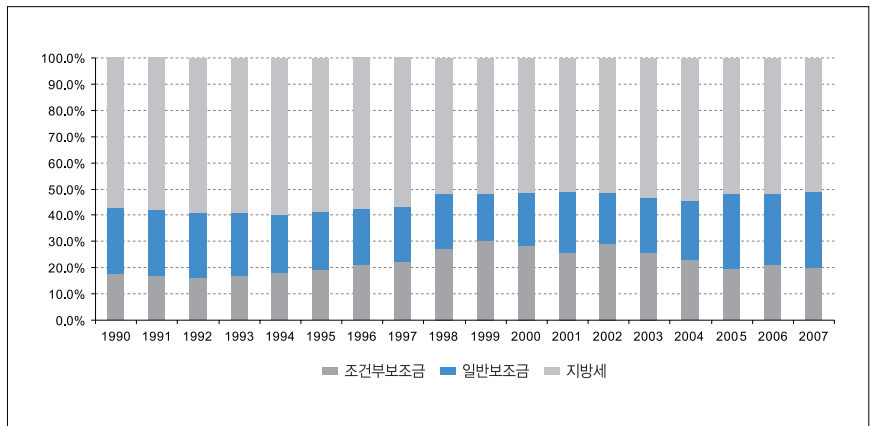
[그림 4] 항목별 지방재정 규모

(단위: 조원)



자료: 일반회계 세입순계 기준이며, 디스플레이타가 반영된 수치임
 일반보조금 = 지방교부세 + 분권교부세
 조건부보조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그림 5] 지방세와 보조금 비중의 변화



주: 지방세와 보조금의 합을 100% 기준으로 한 비중임.
 일반보조금 = 지방교부세 + 분권교부세
 조건부보조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율의 증가

일반보조금은 지방정부에게 사용 용도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lump-sum)' 일반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국가들은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공공재 공급 격차 완화를 위하여 일반보조금을 공식에 의해 배분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일반보조금이며,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내국세의 19.24% 규모가 이에 해당한다⁴⁾. 특히, 2000년 이후 지방교부세율은 13.27%에서 15%, 2005년 19.24%로 증가하여 2008년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원대 규모이다(부록 참고).

■ 분권교부세의 일반재원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규모의 0.94%인 1조 3천억원(2009년 예산기준) 규모이다. 당초 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으로서 한시적으로 5년간 분권교부세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편성된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총 149개(경상적 수요 92개 사업, 비경상적 수요 57개 사업)이며 그 중 50%가 보건복지가족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당초 재원규모에 비하여 사업의 수가 많은 점, 지방이양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 등은 일반예산으로의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복지 관련 대상사업의 일반재원으로의 지원에 대한 적절성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 국고보조금 → 일반재원화 : 지방양여금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균특회계

조건부보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별도로 배분되는 재원이며, 사업목적에 따른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된다.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문헌에서의 국고보조금의 단점과 개편방안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 나타나 있다. 조건부보조금의 경제학적 이해 근거는 이른바 ‘누출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조정가능이다⁵⁾. 일반재원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과잉공급 혹은 과소공급할 우려가 있는 공공재 공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꼬리표(earmarking)’ 있는 재원으로 공급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 당시 국고보조금 사무구분을 통하여 누출효과가 있는 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약 20% 규모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⁶⁾.

기존 문헌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따른 문제점 지적이 두드러진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업별 심사에 따른 배분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이 크고,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기준보조율의 미준수에 따른

조건부보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별도로 배분되는 재원이며, 사업목적에 따른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된다. 조건부보조금 이용의 경제학적 이해 근거는 이른바 ‘누출효과’에 대한 조정가능이다.

4)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96%)와 특별교부세(4%)로 구분되며 현재는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94%)가 포함되어 있다.

5) "... As Boadway argues, the spillover managing role of grants is of limited relevance in mature decentralized system" (Kim, J., 2009). "For number of reasons, both normative and positive, the Pigouvian perspective seems largely unsatisfactory as an explanation for the widespread practice of earmarked grants" (Smart and Bird 2009).

6) 김정훈,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최근의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일반재원에 강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사례이다.

예산사용의 불합리, 수동적인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 등의 고려보다는 각 부처의 이익 목적에 따라 배분될 여지가 있는 등 전략적인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운영상의 한계로 논의된 바 있다(OECD, 2007; Kim and Lotz, 2007, p. 33). 일본에서의 교부세 감소, 국고보조금 증가 등의 개편에 대한 평가로 부처간의 힘겨루기 결과로 표현되기도 하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Mochida 2007). 이와 같은 꾸준한 논의는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 당시 반영되어 지방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편입되었고,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에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한 균특회계(광특회계)가 도입되었다.

■ 정치적 수요에 의한 일반보조금 선택 :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비세

최근의 보조금 제도는 전반적으로 일반보조금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교부세율의 확장, 분권교부세의 지방교부세로의 통합, 지방양여금의 지방교부세로의 이관, 균특회계 도입은 조건부보조금보다는 일반보조금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일반재원에 강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사례이다. 실제 배분과정이나 경제적인 효과 등 일반보조금인 교부세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지방의 자율성을 선택한 '지방세' 로의 도입은 일반재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보여준 사례이다.

나. 평가기준

1) Fiscal imbalance: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 극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지방교부세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그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GDP 대비 형평화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매년 지방교부세는 미시적인 개편작업을 통하여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일반예산 지원을 통한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양적 및 질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가장

큰 재정지원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⁷⁾.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일반예산 지원을 통한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양적 및 질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형평화보조금 운영의 특징

(단위: %, 개)

Federal/regional countries	형평화보조금 규모		형평화보조금 종류	지방정부간 형평화보조금
	GDP 대비 비중	정부지출 대비 비중		
Federal countries				
Australia	3.96	n.a.	1	yes
Austria	6.19	12.41	15	no
Canada	1.07	2.50	2	yes
Germany	1.97	4.21	13	no
Italy	3.00	6.33	5	no
Mexico	3.75	n.a.	8	no
Spain	2.95	7.65	1	no
Switzerland	3.58	9.76	7	yes
Unitary countries				
Denmark	2.81	5.13	1	no
Finland	3.79	7.42	4	no
Greece	1.19	2.39	10	no
Norway	0.54	1.18	2	no
Poland	n.a.	n.a.	10	no
Portugal	1.85	4.05	4	no
Sweden	2.61	4.61	4	yes
United Kingdom	n.a.	3.92	1	yes
한국(2007)	3.0	9.7	1	no

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 중앙 지방정부간 공동세(Tax sharing) 부분 포함되었음
 자료: Hansjorg Blochliger, "Fiscal equalization: Tables", OECD(2007)

2) Fiscal control: 재정수요를 반영 혹은 조정하는 보조금 역할에 적합했는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방양여금(conditional block grant)은 SOC(도로건설)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다. 경제개발 단계에서 지방의 재정수요는 도로 및 SOC 관련부문에 해당한다. 이 경우,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이용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양여금은

7) 이에 대해 기존 연구(안종석(2008))는 공공재공급비용을 고려할 경우, 단순히 지방교부세 배분 이후 집중도 완화에 기여했는가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보조금의 재정충격 완화 역할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 재정규율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연성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점으로 남는다.

조건부보조금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건설에 집중할 경우, 인구집중 및 대도시 확대와 같은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자본이전(capital transfer) 형태의 조건부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인구집중을 비롯한 도시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Sole-Olle 2009), 멕시코시티의 사례에서도 중앙정부의 인프라 비용 부담이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하위정부의 재정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의 포르투갈의 사례에서 복지 및 사회개발 관련은 조건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경제개발 및 일반행정은 일반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Lotz 2009). 우리나라의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 당시 지방양여금이 일반보조금인 지방교부세로 이관된 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3) Fiscal adjustment: 보조금이 경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상위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하위정부의 보이지 않는 재정충격, 재정책대 등 지방정부의 예산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경기에 따른 재정충격을 지방정부와 나누어 갖느냐 혹은 지방정부에 일정부분을 보장해줌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요인을 완화시켜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Buettner 2002). 이에 대한 평가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양적인 면에서 지방재정 규모의 변화로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지방재정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대비 1998년 자체 수입은 35조원에서 32조원대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지방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한 것을 보면,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정 규모 확보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는, 예산결정 구조상 이전재원 중에서도 국고보조금 규모 조정을 통한 재정 확충이 가능하였다. 최근의 경제위기시 주요국들 또한 경상지출 보다는 자본지출 형태의 국고보조금이 주요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OECD 2009).

이상과 같은 보조금의 재정충격 완화 역할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 재정규율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연성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점으로 남는다. 궁극적인 재정책임 면에서 지방정부로서는 적극적인 재정활동의 유인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4) Fiscal price: 지방공공재 공급 가격 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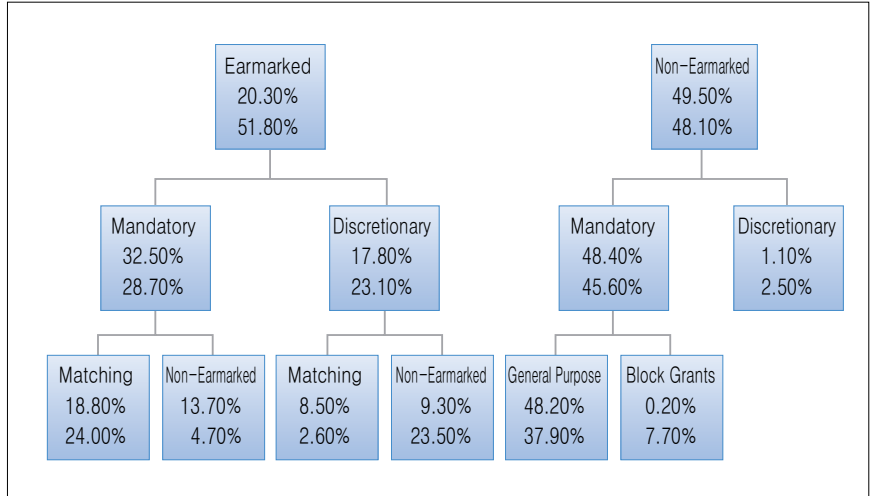
이전재원제도는 최소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조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공공재 공급 가격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전재원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예산부처와 집행부처, 각 부처와 지방정부 등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재정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가격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공재의 지역간 파급효과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에 대한 자치단체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부담비율을 계산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Bird and Smart 2001). 따라서, 대개의 나라에서는 매칭부담 비율 등으로 해당 공공재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과 같은 조건부보조금의 경우, 대개 '지방비 부담'을 이용한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이 문제가 되는데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역비례하여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조정은 자치단체간 공공재 공급을 형평화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고, 지방정부의 선호를 드러냄으로써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비 부담과 관련하여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지방정부 복지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 이후 지속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건설의 경우, 지방비 부담(matching grant)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Lotz 2009, Slack 1980).

우리나라는 지방비 부담과 관련하여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지방정부 복지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 이후 지속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통계적으로 나타난
주요국의 일반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의 비중은 각각
절반 규모에 해당한다.

IV. 외국의 보조금 정책 개편 사례

[그림 6] 2006년 기준 OECD 국가의 보조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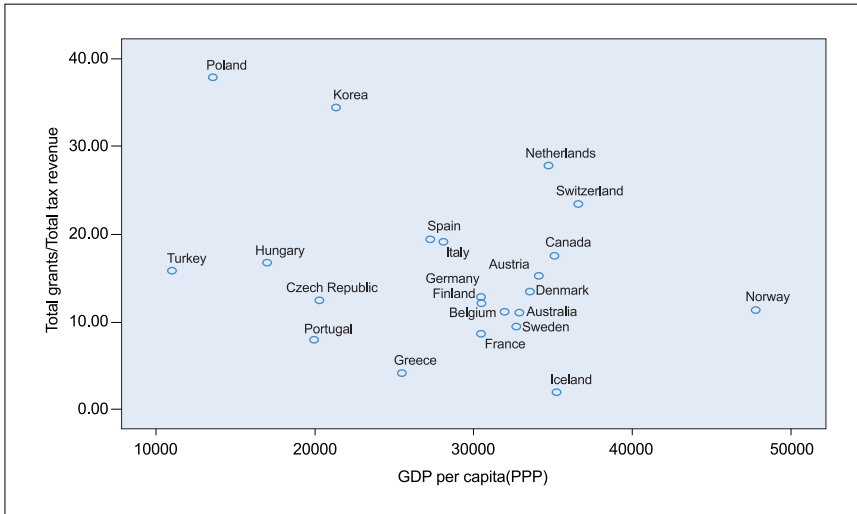


주: 위의 숫자는 State 기준, 아래 숫자는 local 기준 평균수치임.
자료: OECD(2009, p6, Figure 7 재작성).
OECD Fiscal Decentralization Database.

통계적으로 나타난 주요국의 일반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의 비중은 각각 절반 규모에 해당한다(OECD 200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의 평균은 5:5로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일반보조금 비중의 증가로 6:4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의 국제비교에서는 이전재원 구성과 GDP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GDP 수준과 이전재원/총조세 혹은 일반보조금/재정자율지수 등은 그 나라의 소득수준이나 혹은 재정 자율성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으며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8) "재정규모가 커지고 국민의 재정수요가 다양해질수록 '어느 정도로 지방재정규모를 유지할 것인가', 이전재원 규모를 증가할 때 '과세권을 이양할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주요한 정책 여젠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비교를 통한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 운용사례에서는 일정한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김현아,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pp. 94~98.

[그림 7] OECD 국가의 이전재원과 GDP와의 관계



재정분권의 패러다임에 따른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재정규모를 확보하여 재정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재정분권의 패러다임에 따른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재정규모를 확보하여 재정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공공재 공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 완화가 가능할 수 있는 일반보조금은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에서 가장 유용한 보조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형평화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일반보조금의 경우, OECD국가 평균 GDP 대비 2.3%, 정부지출 대비 4.8% 규모에 달한다.

북구유럽 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earmarked specific grant가 block grants로 개편되어 일반보조금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핀란드 헌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의 재정지출 권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출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단계에서의 지출 수준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대부분의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은 일반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⁹⁾. 영국은 대표적으로 일반보조금 비중이 높게 나타난 국가에 해당하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2000년 보조금 개편 당시 tax-sharing과 일반보조금 성향이 두드러진 바 있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등의 연방국가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주요 재정수단으로 tax-sharing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⁰⁾.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보조금 운영사례에서는 ‘조건부보조금’의 증가세도

9) Moisis (2009)

10) Tax-sharing은 그 성격상 공식에 의해 형평화보조금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일반보조금적인 이전 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기능
강화시에는 조건부보조금이
더욱 유리하다.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 미국과 1997~98년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로의 재원을 삭감하면서 일반보조금을 specific block grant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반보조금 위주인 영국의 경우에도 2007년 교육 관련 조건부보조금('Dedicated Schools Grant', DSG)을 도입한 이후, 조건부보조금(Ring-fencing)의 비중이 증가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1986년 국고보조금 개편을 통하여 조건부보조금을 삭감한 바 있으나, 이에 따른 공공재 공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제위기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정치인들간의 떠넘기기가 지속되자 다시 조건부보조금화하는 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다¹¹⁾.

이와 같은 조건부보조금으로의 변화 이유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기능 강화시에는 조건부보조금이 더욱 유리한 면이 있음을 들 수 있다(OECD 2009). Stimulus package의 경우, 대개 시설 및 자본투자가 주를 이루며 이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조건부보조금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둘째, 재정수요를 반영한 국가정책적 목적(policy commitment)에 따른 지출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보조금 안에서 교육을 포괄하는 경우보다는 별도의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셋째,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과의 연계면에서 볼 때, 조건부보조금으로 지원된 정책사업의 경우 예산 및 집행 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hah 2009, Stezewski 2009). 넷째, 조건부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책임성(electoral 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가 흥미롭다. 근본적으로 조건부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일반재원으로의 대체성(fungibility)으로 인하여 이론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그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투표권으로 지역의 재정수요를 표출하고, 이를 반영한 보조금 수혜가 유권자들에게 공식에 의해 배분되는 일반보조금보다 더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Smart and Bird 2009).

V. 우리나라 보조금정책에 대한 방향

가. 보조금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운영

지방세와 보조금간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수준을 일정수준 유지한 채 그 안에서의 지방세, 보조금간의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

11) Sectoral block grant에서 earmarked block grant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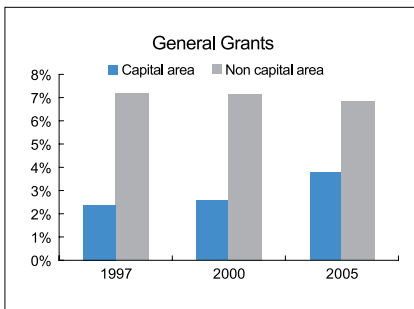
12) <부록> 참고

지는 사실상 일반보조금이나 조건부보조금은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이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및 [그림 9]에서 왼쪽은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평균배분율을, 오른쪽 막대는 나머지 13개 비수도권 지역의 배분율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은 일반보조금이나 조건부보조금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높은 배분율을 보이는 등 운영상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본격적인 법정사업이 도입되면서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배분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보조금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배분되지만, 조건부보조금은 오히려 인구가 많고 재정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대도시 배분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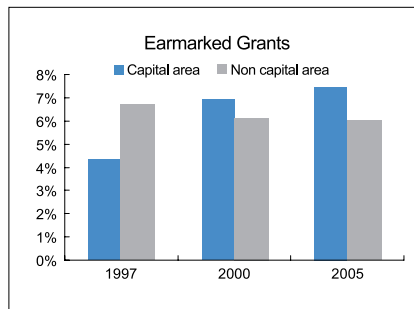
따라서, 수동적으로 국세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교부세 규모를 확보하고 난 후, 나머지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보조금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고보조금 정책이 단순히 재원보전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요 공공재 공급의 우선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정책이 단순히 재원보전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요 공공재 공급의 우선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일반보조금의 배분비중



[그림 9]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중



위의 그림은 또 다른 우리나라 일반보조금 정책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 현상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개발 수요’, 즉 재정수요를 감안한 배분방식의 개편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복지수요에 대한 재정수요를 국고보조금이 아닌 안정적인 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네덜란드에서도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와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

13) '2007년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회의 자료집'

현실적인 재정수요 및
공공재 공급의 성격에 따른
보조금으로는 조건부보조금을
통한 복지지출 확보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 현상이 주요 특징으로 지적된 바 있다(Huigsloot 2009). 이 경우, 지방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보조금'으로 지급하여도 해당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겠으나, 투표와 연결되지 않는 불리한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 현상, 즉, 수도권 지역으로의 지방교부세 증가는 해당 지역민이 요구하는 재정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조금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OECD(2007)에서는 재원의 효과, 사후 평가를 고려하여 각각의 보조금이 그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 재정수요(Expenditure need)를 감안한 탄력적 운영

현재 공공부문에서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는 복지 관련 지출 부분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2010년 보건·복지분야 지출규모는 약 81조원으로 총지출의 28% 규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 중 사회개발부분의 지출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에 따른 보건복지 관련 비중은 2000년 31.2%에서 2009년 44.3%로 증가한 반면, 건설교통 관련 지출은 24.2%에서 15.8%로 하락하고 있다.

증가하는 복지지출은 그 성격상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경상지출'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Enid 1980 등). 복지지출 분야는 강한 재분배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직접사업의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재정수요 및 공공재 공급의 성격에 따른 보조금으로는 조건부보조금을 통한 복지 지출 확보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 일반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끈끈이죽 효과 등의 결과로 재정지출 효과는 조건부보조금보다는 작게 나타난다. 실제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특히 특정 공공재 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이 비교적 높은 스웨덴의 경우에도, 새로운 서비스 공급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재정성과 면에서 조건부보조금으로 도입하고 있다(Lotz 2008). 특히, 1986년 미국의 보조금 개편 당시 조건부보조금에서 일반보조금으로의 전환은 복지지출 수준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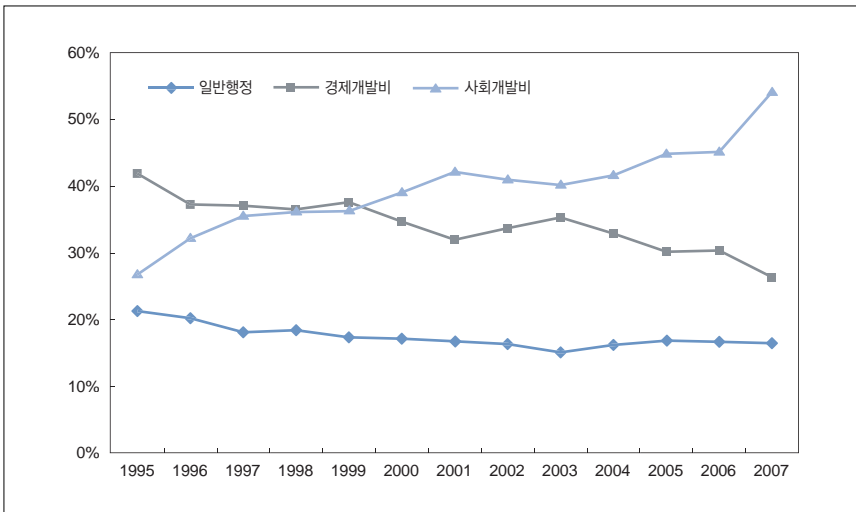
(earmarked → block grant, Brueckner 2000).

Snodden and Hobson(2009)은 경제위기하에서는 모니터가 가능하고 정책적 효과가 더욱 분명한 조건부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재정지출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조건부보조금이 보다 탄력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위기하에서는 모니터가 가능하고 정책적 효과가 더욱 분명한 조건부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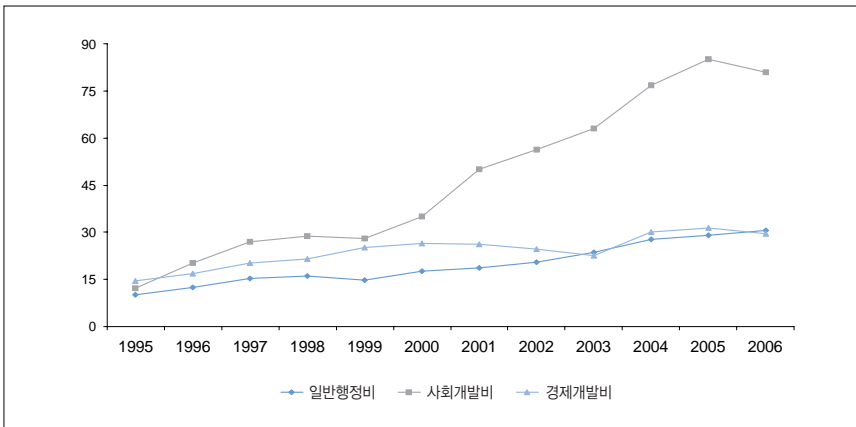
[그림 10] 기능별 지방세출 비중 변화

(단위: %)



[그림 11] 서울시의 1인당 세출규모

(단위: 만원)



주: 디스플레이터 반영한 수치임.

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요약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soft budget 정도에 따른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

다. soft budget 문제에 따른 재정 책임성 강화

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요약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soft budget 정도에 따른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Smart(1998)는 중앙정부의 형평화보조금은 지방정부 세율을 ‘감소’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분배 의지가 강할수록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Sole-Olle(2009), Shah(2006), OECD(2009)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tax effort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반보조금이 더욱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uettner 2009).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로의 재정 의존도를 증가시켜 재정 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지출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역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특정 지출부분을 증가시키는 등 자원 사용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조건부보조금의 근본적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정치인들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떠넘기식(상위정부의 잘못) 태도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재원을 주는 쪽(donor, 중앙정부)과 받는 쪽(recipient, 지방정부)의 비대칭적 인센티브가 클 경우, 즉 연성예산의 정도가 클 경우(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클 경우)에는 이전재원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경우에는 일반보조금보다는 조건부보조금이 지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의 의료 관련 block grant로 인한 재정 책임성 약화 이후 조건부보조금으로의 전환도 주요 사례에 해당한다(Borge 2009).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미시적인 개선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규모면에서는 증가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중앙정부로의 의존도,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최하위 수준 등을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은 조건부보조금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보조금의 중요한 기능은 첫째, 지역의 기본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형평성’이고, 둘째, 공공재 공급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원조달의 ‘안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기본

적인 지역재정의 유지를 위한 일반보조금의 기능이 우선적인 보조금 수단인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EU와 Worldbank 등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자원 확보에 보다 많은 정당성이 부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건부보조금의 정책적 근거(rationale of earmarked grants)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건부보조금의 의의를 논하기 위하여 최근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어떤 보조금이 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국제비교에서는 나라마다 다른 정부간 재정환경,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 제반 여건,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능력 여건 등이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최근의 국고보조금 개편을 포함한 이전재원제도 개편의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지난 2005년 개편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조금은 일반보조금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방교부세율의 증가, 지방양여금의 지방교부세로의 이관,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지방교부세화, 균특회계 도입 등은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보조금화 현상에 대한 몇 가지 우려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복지지출 수준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건부보조금의 정책적 유용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세출기능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정분권 상태에서의 일반보조금의 증가는 연성예산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보조금 운용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KIPF**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복지지출 수준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건부보조금의
정책적 유용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김현아,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안종석,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Bergvall, Daniel, Claire Charbit, Dirk-Jan Kraan and Olarf Merk,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zed public spend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5, No.4, 2006.

- Blochliker, Hansjorg and Oliver Petzold, "Taxes or grants: what revenue source for sub-central government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706, ECO/WKP(2009) 47, July 2009.
- Blochliker, H. and David King, "Less than you thought: the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 *OECD Economic Studies* 43, 2006, pp. 155~188.
- Bird, Richard M. and Michael Smart,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some less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Symposium i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 Asian countries: Issues and practices, University of Toronto, 2001.
- Bird, Richard M. and A. Fiszbein, "Columbia: The central role of central governments in fiscal decentralization," in Bird and Vaillancourt, Eds., 1998.
- Boex, James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finance reform a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DG Working Paper NO.2009-6, Urban institute cent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governance, June 2009.
- Brueckner, J.K., "Welfare reform and the race to the bottom : Theory and Evide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66(3), 2000, pp. 505~525.
- Büttner, T., "Fiscal federalism and interstate risk sharing: 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y," *Economics letters* 74, 2002, pp. 195~202.
- Kim, Hyun-A, "Does political decentralization cause fiscal decentralization i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the 60th Conference in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5.
- Kim, Hyun-A, "The contemporary needs of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in Korea: An assessment," prepared for the workshop, Copenhagen 17-18 September 2009, Co-organized by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Welfare.
- Kim, Junghun, "General grants vs earmarked grants: Does practice meet theory?," prepared for the workshop, Copenhagen 17-18

- September 2009, Co-organized by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Welfare.
- Lotz, Jorgen, "Member states' practices for the funding of new competences of local authorities," Unpublished manuscript, Directorate General of Democracy and Political Affairs, Council of Europe, 2009.
- Mochida N., "Measuring expenditure needs: Japan's experiences," in J. Kim and J. Lotz. eds., *Measuri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Needs – the Copenhagen workshop 2007*
- Moisio, Antti, "Aiming to offset local cost disadvantages: the case of Finland," prepared for the workshop Policies of grants to sub-central governments, Copenhagen 17-18 September 2009, Co-organized by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Welfare.
- Oulasvirta, Lasse, "Real and perceived effects of changing the grant system from specific to general grants", *Public Choice* 91: 1997, pp. 397~416.
- Shah, Anwar,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Policy and research series* No.23, Worldbank, 1994.
- Slack, Enid, "Grants to large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 Principles and Practices*, Boadway and Shah, Worldbank, 2007, pp. 453~478.
- Slack, Enid, "Local fiscal response to intergovernmental transf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 1980, pp. 364~70.
- Smart, M. and Richard Bird, "Earmarked grants and accountability in government," Copenhagen 17-18 September 2009, Co-organized by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Welfare.
- Sole-Olle, A.,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o local governments in Spain: An assessment of their virtues and perils," prepared for the workshop Policies of grants to sub-central governments, Copenhagen 17-18 September 2009, Co-organized by KIPF and the Danish Ministry of Welfare.
- Snoddon, T., and Paul Hobson, "Cost sharing and Federal-provincial

fiscal relations,” Presentation for the John Deutch Institute Conference(The 2009 Federal budget : Challenge, Response and Retrospect 2009), May 2009.

부 록

〈부표 1〉 우리나라 지방세와 보조금

(단위: 조원, %)

연 도	지방세		일반보조금		조건부보조금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0	6.4	57.3	2.8	24.9	2.0	17.9
1991	8.0	58.1	3.5	25.0	2.3	17.0
1992	9.5	59.2	3.9	24.6	2.6	16.2
1993	11.0	59.3	4.4	23.7	3.2	17.0
1994	13.2	59.8	4.9	22.0	4.0	18.3
1995	15.3	58.7	5.7	21.7	5.1	19.5
1996	17.4	57.6	6.4	21.1	6.4	21.3
1997	18.4	56.8	6.8	20.9	7.2	22.3
1998	17.1	51.6	7.0	21.2	9.1	27.2
1999	18.6	51.7	6.5	18.2	10.8	30.1
2000	20.6	51.2	8.2	20.5	11.4	28.3
2001	26.7	51.1	12.2	23.4	13.3	25.5
2002	31.5	51.4	12.1	19.7	17.7	28.9
2003	33.1	53.0	13.4	21.4	16.0	25.6
2004	34.2	54.3	14.2	22.6	14.5	23.1
2005	36.0	51.5	20.0	28.7	13.8	19.8
2006	41.3	51.6	21.7	27.1	17.1	21.3
2007	43.5	50.9	25.2	29.5	16.7	19.6

주: 일반보조금 = 지방교부세 + 분권교부세
 조건부보조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비중(100%) = 지방세 + 일반보조금 + 조건부보조금

〈부표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중 지방정부 지출 비중

(Example of share of grants to SNGs as a percentage of total national stimulus spending)

	General Purpose Grants	Earmarked Grants		TOTAL
		Current Expenditure	Capital Expenditure	
Australia	-	0%	56%	56%
Canada	-	6%	78%	84%
France	-	-	27%	27%
Germany	-	-	29%	29%
Japan	33%	-	18%	51%
Korea	-	-	28%	28%
Norway	7%	2%	30%	39%
Portugal	-	-	22%	22%
Spain	-	1%	72%	73%
United States*	-	-	13%	13%
average(16)	2%	1%	23%	26%

자료: Country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prepared by OECD's Network on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2009, p.11, Box 1)

〈부표 3〉 OECD 국가의 Non-earmarked 비중과 GDP와의 관계

	이전재원 대비 Non-earmarked 비중	GDP per capita
Austria	4.6	32,737
Belgium	2.1	30,559
Canada	30.1	33,353
Denmark	34.1	31,764
Finland	35.1	29,227
France	17.8	29,302
Hungary	10.9	15,780
Iceland	23.1	32,592
Italy	15.5	27,434
Korea	21.8	19,924
Netherlands	9.7	33,122
Norway	16.9	45,154
Poland	21.4	12,700
Portugal	10.8	19,332
Spain	38.9	26,015
Sweden	31.5	30,942

포이즌필(Poison Pill)의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그에 따른 조세문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jnskim@kipf.re.kr)

최근 정부는
국내 상장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 인정되는
포이즌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I. 서론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경영권보호 정책에서 M&A 활성화를 통한 경영권 경쟁정책으로 그 기조가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기조가 변화하게 된 이유는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의 유치가 시급하였고 이를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경영권보호를 위해 시행되던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되었다¹⁾. 그 결과 적대적 M&A 위협은 크게 증가한 반면²⁾,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수단은 따로 없어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자본의 국내 진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급속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의 경영환경이 적대적 인수회사에 비해 방어회사가 불리한 상황이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최소한 합법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어수단의 종류와 범위를 국제수준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정부는 국내 상장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의 부재로 인해 생산적 투자에 사용될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낭비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 인정되는 포이즌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 법무부는 포이즌필의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8년 2월에 폐지되었고,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 투자한도는 1998년 5월 폐지되었음.

2) 아시아계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의 SK텔레콤에 대한 M&A 시도(1999년)와 미국계 헤지펀드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M&A 시도(2005년)가 대표적인 사례임.

그러나 정부의 포이즌필 도입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즉, 적대적 공격은 쉬운 반면 강력한 M&A 방어수단이 적다는 점이 정부의 포이즌필 도입 이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소유와 순환출자 등 기업의 지배구조가 비공식적인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포이즌필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살아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포이즌필의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포이즌필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초점은 포이즌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포이즌필의 도입을 가정하여 포이즌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미리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 제도를 포이즌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들이 적대적 인수자에게는 '독약' 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II. 포이즌필의 의의

1. 포이즌필의 개념

포이즌필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플립인필(flip-in pill)과 플립오버필(flip-over pill)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lip-in pill은 특정인이 공개매수에 의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게 되었을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상회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flip-over pill은 적대적 기업인수를 행하는 회사가 단순히 지배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대상회사 주주들에게 합병 후 생존하는 회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경우 당해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적 가치를 희석시키고 그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³⁾. 이 제도를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들이 적대적 인수자에게는 '독약' 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포이즌필의 전형적인 형태는 적대적 인수자를 배제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3) Lucian Arey Bebchuck, John C. Coates IV & Guhan Subramanian, "The Powerful Antitakeover Force of staggered Boards: Theory, Evidence and Policy," 55 Stanford L. Rev., 2002, pp. 904~ 907(정래영, 2006, p.159).

포이즌필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적대적 M&A 방어수단 부재로 인하여 기업역량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warrant)'을 부여하는 것이다⁴⁾. 신주인수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일종의 옵션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증권은 대상회사의 개별 보통주 각각에 대해 배당의 형태로 발행되는데, 평상시에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며 독립적인 증권으로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이즌필로 사용될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첨가해 발행하여야 한다⁵⁾.

첫째, 이사회가 모든 보통 주주들에게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존속 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조항이 첨가되거나, 합병까지 이르지 않으나 상당한 지분확보에 따른 지배권 취득의 기업인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상회사의 보통주를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항이 첨가되어야 한다. 둘째, 공격회사에 의한 합병 또는 상당한 지분의 취득과 같은 개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주식과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거래 및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첨가되어야 한다. 셋째, 사후적으로 이러한 옵션증권을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상황(redemption)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인수자도 주주이므로 배당을 통해 옵션증권을 부여받지만 이러한 증권을 행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포이즌필의 도입 배경

정부가 밝히고 있는 포이즌필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⁶⁾. 첫째,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 등 적대적 M&A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적대적 M&A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주, 황금주, 포이즌필 등 선진국에 도입된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공격과 방어 수단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둘째, 적대적 M&A 방어수단 부재로 인하여 기업역량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유효한 방어수단의 부재로 상장회사들은 2008년 1월말 현재 64조원의 자사주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이나 상호출자는 고비용·저효율의 방어수단이며,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회사의 재원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경영권 방어 비용으로 왜곡되어 집행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권세훈(2009), p. 1.
 5) 신석훈(2008b), pp. 122~123.
 6) 법무부, 2009년 11월 9일자 보도자료 참조.

이와 같이 정부는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낭비되는 기업역량을 생산적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이즌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3. 포이즌필(신주인수권선택권)에 관한 상법개정안

포이즌필은 적대적 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방어비용이 생산적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상법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12월 1일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flip-in pill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주인수권선택권이란 적대적 인수자가 대상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인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대적 인수자의 자격은 주주(복수 주주도 가능)이며, 주식 취득의 목적은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개정안을 규정하고 있다⁷⁾.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신주인수선택권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동의)⁸⁾를 통해 정관 변경을 하므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가 결정되면 이사회 결의(이사 총수의 2/3 이상 동의)를 통해서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된다⁹⁾. 즉 정관에는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고,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적대적 인수자에 대한 차별조항, 적대적 인수자의 범위,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제3자가 아닌 주주에게만, 그리고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제공된다¹⁰⁾. 이 경우 신주인수가액은 권면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즉 액면가액(일반적으로 주당 5천원)의 미달 발행을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회사의 가치 및 주주의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주간에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선택권이란 적대적 인수자가 대상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인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7) 상법개정안 제432조의2 제4항 제호

8) 상법 제434조

9) 상법개정안 제432조의3

10) 상법개정안 제432조의2 제2항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적대적 인수자는 다른 주주에게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달리 차별취급을 받을 수 있다.

상황조건에 대하여 차별을 둘 수 있다.

〈표 1〉 신주인수선택권의 대한 정관과 이사회 규정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 규정사항
1.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의 뜻	1.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의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 또는 산정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황에 따라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발행한도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내용
4. 적대적 인수자(주주)의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뜻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적대적 인수자(주주)의 행사에 대한 차별적인 구체적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6. 신주인수권의 상환의 뜻과 사유 7.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8. 상환의 효력발생일 9.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기타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10. 적대적 인수자(주주)에 대한 상환의 차별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및 상환

적대적 M&A의 상황이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 주주는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라는 특정 상황에 방어 목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므로 일반적으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¹¹⁾.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된 후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경제적인 부담 등의 사유로 주주가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결의를 통해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상환하고, 상환의 대가로 신주 또는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있다¹²⁾.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적대적 인수자는 다른 주주에게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달리 차별취급을 받을 수 있다.

11) 상법개정안 제432조의5 제1항
12) 상법개정안 제432조의4, 상법개정안 제330조에 따르면 상환가액도 액면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음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소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였지만 방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인수선택권은 전부 소각할 수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각 역시 무상으로 이루어진다¹³⁾.

포이즌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조차 정부가 제시한 상법개정안이 오히려 실효성이 미흡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4. 포이즌필(신주인수권선택권)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정부의 포이즌필 도입 계획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포이즌필이 처음 도입된 미국에서도 자본시장이란 기업자산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시켜 줄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져야 하므로 경영진은 이러한 매커니즘을 인위적으로 막는 경영권 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즉, 적대적 기업 인수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결정은 주주들이 해야 하며, 경영진(이사회)의 역할은 주주들의 거래를 돕는 정도로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경영진이 주주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경영진은 교체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권 거래를 통해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포이즌필이 도입되던 당시 제기되었던 이러한 주장과 유사한 비판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국과 달리 재벌 총수 일가가 기업을 소유·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소유와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문제가 비공식적인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포이즌필을 도입하게 되면 재벌들의 기득권만 더 보호해주고 주주에 대한 책임경영과 무능한 경영진 퇴출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어렵게 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포이즌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조차 정부가 제시한 상법개정안이 오히려 실효성이 미흡한 제도라고 비판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많다. 포이즌필을 도입하려면 회사의 정관을 개정해야 하고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현재 거래소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이 30%에 이르고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7개사의 외국인 지분이 40~50%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13) 상법개정안 제432조의5 제3항

현재 flip-in pill과 flip-over pill이 보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포이즌필의 채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주주총회나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기업이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안의 도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주요국의 관련 제도 및 시사점

1. 미국

가. 운용형태

미국에서는 1983년 Lenox Inc.의 이사회가 Brown-Forman Distillers Corp.의 적대적 M&A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환권부우선주플랜(conversion preferred stock dividend plan)¹⁴⁾을 이용한 것이 최초의 포이즌필 사례로 알려져 있다.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사건에서 델라웨어 법원이 포이즌필의 적법성을 인정하자, 포이즌필은 가장 유효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포이즌필이 등장하였으며, 현재 flip-in pill과 flip-over pill이 보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포이즌필의 채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주주총회나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flip-over pill과 flip-in pill은 대상회사가 보통주를 가진 주주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권리(워런트)를 배당으로 부여하며, 이 권리는 개시 사유의 발생 즉 대량취득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대량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가 개시되기 전에는 행사 및 보통주와의 분리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적대적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 부여 및 행사를 제한하여 매수자의 주가가치를 희석화하며, 아울러 대상회사 이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그 행사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가 적대적 M&A에 보다 우월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나. 적법성 문제

포이즌필에 의한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은 미국의 경우 주로 법원의 판례에

14) 전환권부우선주플랜은 대상회사의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게 매수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배정함으로써 2단계 공개매수의 경우 대상회사의 잔존 주주가 매수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 플랜은 매수회사가 대상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거나 매수자가 자연인 또는 폐쇄회사인 경우에는 억지력이 없었고, 또 대상회사의 상환(redemption)이 인정되지 않아 우호적인 매수행정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어 거의 이용되지 않음.

의해 확립되고 있다. 적대적인 회사 인수시도가 있는 경우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회사법상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방어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법상 선관외무 및 충실의무 법리를 적용하여 이사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경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¹⁵⁾. 이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적대적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이사가 경영권 방어장치들을 사용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방어 조치 행사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회사법상의 경영판단 원칙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 원칙을 마련하였다. 방어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사업방향 기초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방어 조치는 이러한 위협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수준임이 사후적으로 밝혀져야 한다¹⁶⁾.

기존 주주와 적대적 매수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주별로 차이를 보인다. 뉴저지, 콜로라도, 위스콘신 등의 주 법원은 포이즌필이 동종주식을 가진 주주 중 인수 시도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한 것이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적어도 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동일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사이에 불평등 취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반면 델라웨어를 비롯한 다수의 주¹⁷⁾ 법원에서는 포이즌 필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주식에 대한 차별이 아닌 방어수단의 채택으로 발생한 주주간 차별로 보고 주법상 경영권 판단의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¹⁸⁾.

기존 주주와 적대적 매수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주별로 차이를 보인다.

2. 일본

가. 운용형태

일본은 2001년 10월 상법개정에 의하여 신주예약권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에는 신회사법(회사법제현대화법)에서 이를 더욱 보강하면서 적대적 M&A에 대해 신주예약권에 의한 포이즌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2005년 니레코가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방어 목적으로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것이 최초의 포이즌필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신회사법상 신주예약권은 주주가 그 지주비율에 따라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회사는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예약권을 배정하여, 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은 자가

15) Stephen M. Bainbridge(2006), pp. 827~828; 신석훈(2008), p. 34.

16) Stephen M. Bainbridge(2006), p. 799; 신석훈(2008 a), p. 34.

17) 인디아나, 미네소타, 미시간 등

18) 정래영(2006), p. 162.

일본에서는 2005년 니레코가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방어 목적으로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것이 최초의 포이즌필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신주예약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소정의 행사금액의 납입을 받은 후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가 신주예약권을 유상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회사에서는 신주예약권의 행사시 교부될 주식의 수와 행사금액, 신주예약권의 내용 등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공개회사에서는 그 내용과 수의 상한, 납입금액의 하한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하나, 정관으로 그 구체적인 발행사항의 결정을 이사의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다¹⁹⁾. 신주인수권의 무상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²⁰⁾.

또한 일본 신회사법은 회사에 의한 신주예약권의 강제소각을 허용하고 있다. 회사는 그 회사가 발행한 신주예약권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신주예약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취득사유를 정한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후 일정한 취득사유가 생긴 경우에 회사가 당해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금이나 주식, 사채 등과 교환하여 취득 소각할 수 있다²¹⁾.

나. 적법성 문제²²⁾

2005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 및 법무성은 「기업가치·주주공동의 이익 확보 또는 향상을 위한 매수방어책에 관한 지침」²³⁾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전적으로 지켜져야 할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가치·주주 공동의 이익 확보 및 향상의 원칙’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발동 및 폐지는 기업가치 나아가서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확보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전개시·주주의사의 원칙’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은 도입시 목적,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개시되는 것은 물론 주주의 합리적 의사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필요성·상당성의 원칙’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이 적대적 인수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 상당(相當), 즉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어로치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목적에 비추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지침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예약권 발행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이러한 발행은 위의 세 가지 원칙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신주예약권이 주총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정에 의해 발행된 경우라면 세 번째 원칙인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기업의 포이즌필 사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적법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경

19) 신회사법 제239조, 제309조, 제241조.
 20) 신회사법 제278조.
 21) 신회사법 제236조, 제238조.
 22) 松本眞輔(2005), p. 82; 신석훈(2008a), p.52~59; 김택주(2006), pp. 146~148.
 23) 이 지침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인수에 관한 공정한 규칙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기업가치연구회’가 2005년 5월 27일에 발간한 「기업가치보고서(Corporate Value Report)」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 설정을 위한 기준을 토대로 마련 하였음.

제산업성 및 법무성의 지침 이외에도 일본 법원의 판례를 통해 포이즌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법원은 불독소스 사건²⁴⁾에서 적대적 인수자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조건을 붙인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적대적 기업 인수자(스틸파트너스)가 인수 후 장래의 경영계획 혹은 장래의 경영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본 방침을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수자가 바람직한 의도에서 인수하려 하기보다는 불독소스사의 지분인수 후 지분을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경영권 방어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었으므로 공정성 문제에서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상회사의 사후적 방어조치로 신주예약권이 발행되었으나 그 결의가 주총에서 이루어져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원의 판결을 가져왔다²⁵⁾.

다음으로 니레코 사건²⁶⁾²⁷⁾에서 법원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전적으로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것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회가 사전적으로 경영권 방어조치를 마련해두는 결정이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주예약권 발행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둘째, 이미 발행된 신주예약권을 사후적으로 소각 여부에 대한 이사회 결정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사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하고, 셋째,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적대적 M&A와 무관한 주주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주예약권을 발행해 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포이즌필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신주예약권을 발행할 때 이것이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예로, 이사회가 아닌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결정기구 등)을 사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후에 포이즌필이 작동하여 경영권을 방어했을 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미국과 차이를 보인다.

3. 시사점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업들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정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부가 채택한 기준은 대부분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 법리를 기초로 하되 이를 전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으며, 적법성 판단에 있어 주주들의 개입을 미국보다 강조하고 있다. 일본 법원

일본법원은 불독소스 사건에서 적대적 인수자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조건을 붙인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4) 적대적 매수자인 스틸파트너스가 불독소스사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공표를 하자 대상회사가 주총의 특별결의를 통해 신주예약권을 발행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사건이었음. 일반 주주들에게는 신주예약권을 무상배정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반면 적대적 인수 시도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주총에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적대적 매수자는 주주간 차별적인 조건을 붙여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것은 회사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신주예약권 발행금지를 신청하였음(주총 의결에 의한 사후적 방어조치, 2007년 5월).

25) Kenichi Osugi(2007), p. 158.

26) 니레코 이사회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전적으로 신주예약권을 미리 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적대적 M&A와 무관한 일반 주주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 신주예약권 발행은 불공정한 발행이라며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사회 의결에 의한 사전적 방어조치, 2005년 3월).

27) 자세한 논의는 정순섭(2005), pp. 496~500 참조.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규정으로만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은 포이즌필 채택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해 이사회 재량보다는 주주 의사를 매우 중시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적대적 인수시에 이사회가 아닌 독립적인 의결기구가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내린 결정인지를 따져 포이즌필 작동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규정으로만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상장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30%에 달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비상장기업이나 공공적 법인의 경우 포이즌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IV. 포이즌필 도입에 따른 조세문제

1.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여부

가. 조세형평성 측면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분할에 대해서 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합병·분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 공정가치, 즉 시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로 인한 부의 이전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²⁸⁾과 상속세및증여세법²⁹⁾에서 과세거래로 보고 있다.

- 불공정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불공정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포괄주의 과세³⁰⁾,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분할, 증자·감자,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될 것이다.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주주의 신주인수선택권은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과세권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법적·경제적 실질이 신주인수권³¹⁾ 즉, 증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때,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취급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세

28)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8호, 8의2, 9호
 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39조, 39조의2, 39조의3, 40조, 41조
 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31)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상법 제418조).

법의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공정가액으로 지급납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주가 보유한 1주당 주식가치는 증자 전후를 비교해 볼 때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의 포기, 재배정 등을 통해서 공정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주주의 부를 이전시킨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주주간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공정가액이 아니며, 적대적 인수자가 보유한 신주인수선택권은 권리가 제한된다. 적대적 인수자의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권리의 제한은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주인수권의 실행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대적 인수자의 부는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정가액보다 저가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주주의 부는 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이전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 된다³²⁾. 신주인수선택권도 공정가액보다 행사가격이 낮으므로 저가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인수자의 신주인수선택권 행사가 법에서 금지되고 있어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부가 이전되는 것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과세거래와 유사하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에 대한 부의 이전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거래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도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와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나. 정책적 배려

주주가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적대적 M&A의 방어를 위한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주가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방법은 경영의 효율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통한 기업가치의 증대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의 혜택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신주인수선택권은 기업의 경영권 획득에 대한 사실상 주주간 지분 취득거래에 해당되어 기업 구조조정³³⁾과 같이 산업 또는 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도 높지 않아 보인다.

주주가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33)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법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해 자산과 권리에 대한
구별은 과세 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 종합의견

적대적 M&A로 인한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간 부의 이전을 수반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의 가격은 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실제 1주당 가치가 행사금액을 상회한다면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취득한 주주는 그 차액만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과세방안

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성격

미국의 경우 포이즌필에 대해서는 연방세법이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주인수선택권의 본질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 권리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은 별개의 독립된 자산이 아닌 권리로 보고 있다³⁴⁾. 이러한 논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미리 정한 상환금액으로 소각예정된 주식³⁵⁾을 말하는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상당액(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³⁶⁾. 즉, 본래의 주식에 이익상환권이 첨가된 것이며 주식과 분리되어 양도될 수 없다.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고 적대적 M&A라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주주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해 자산과 권리에 대한 구별은 과세 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본질이 자산이라면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과세될 것이며, 권리라면 실제 권리가 행사되어 소득이 발생될 때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adoption)

신주인수선택권은 권리에 해당되므로, 이사회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

34) (Tax Notes, July 10, 1989, p. 137) RS Corporation Tax Division Branch Chief James Dahlberg told a Practising Law Institute session on corporate acquisitions on October 7 that the IRS, under pressure from corporate defense lawyers, would regard the adoption of a poison pill as a tax-free event. "We took a lot of heat on that one," Dahlberg said of Letter Ruling 8808081, which held that poison pill rights were separate property in a reorganization. "One way or another, we are going to permit the tax-free creation of poison pill rights." He emphasized that the rights would not be treated as separate property for purposes of section 368. (For the full text of LTR 8808081, see 88 TNT 46-84.)

(Tax Notes, Oct. 17, 1988, p. 258) The current thinking in government circles is that adoption of a poison pill is a nothing. Therefore, the rights would be considered part of the stock, so adopting a pill works a change in the terms of the stock, but not a material change.

35)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36) 상법 제462조

더라도 과세대상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신주인수권에 대한 조세상의 취급과 동일하다.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및 상환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저가로 유상증자하여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 2> 증자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요약

구분	증여이익 과세요건		납세자	증여의제 계산방식
	특수 관계	30% ¹⁾ 차이		
(A) 저가 실권주 재배정	적용 안됨	적용 안됨	실권주 인수자	$(\text{X}^{\text{2)})} - (\text{Y}^{\text{3)})} \times \text{배정 받은 실권주}$
(B)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적용됨	적용됨	신주 인수자	$(\text{X}) - (\text{Y}) \times \text{증자후 신주 인수자 지분비율} \times \text{신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있는 실권주수}$
(C)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	적용 안됨	적용 안됨	신주 인수자	$(\text{X}) - (\text{Y}) \times \text{균등조건 초과 인수한 신주 수}$

주: 1) 30% rule : (증자후 1주당 평가액-신주1주당 인수가액)/증자후 1주당 평가액 ≥ 30%
 2) X 증자후 1주당 평가액=(증자전 1주당가액×증자전 주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주식수) ÷ (증자전 주식수+증자 주식수)
 3) Y 신주 1주당 인수가액=1주당 주식대금 납입액
 자료: 이광재, 『주식이동과 세무』, 세경사, 2009, p.235.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주간의 거래이고, 인수가액이 공정가액보다 낮을 것이며, 적대적 인수자의 실권된 신주인수선택권이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불공정증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유형으로 <표 2>의 (B)에 해당할 것이다.

과세대상 금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주주간 부의 이전금액에 한정하여야 한다. 즉 적대적 인수자가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면 귀속될 경제적 이득금액(=신주인수선택권 미행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금액)은 상법

개인주주와 달리 부의 귀속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 시점에서 과세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때 과세된다.

의 차별조항으로 인해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에게 이전될 것이다.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과세되는 금액은 적대적 인수자의 경제적 손실금액에 증자 후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과세된 금액은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향후 신주 처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

불공정증자에 대한 증여의제 (B)에서는 실권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권주주가 증자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이유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증여행위를 차단하고자 세법에서 과세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신주인수선택권의 실권 목적은 불공정증자의 실권 목적과 상이하다. 즉, 신주인수선택권의 실권 목적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강행규정인 상법에 따라 실권된 것이지, 다른 주주에게 경제적 이득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적대적 인수자와 다른 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정도라면, 그 주주는 적대적 인수자와 동일한 위험집단으로 이사회에서 분류할 가능성이 있고 신주인수선택권도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신주인수선택권에 따라 행사하는 개인주주는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다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금액조건(과세대상 금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³⁷⁾)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대적 M&A의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불가피한 방법이고, 증여세 부담으로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 상환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적대적 M&A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세대상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주주와 달리 부의 귀속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 시점에서 과세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때 과세된다. 적대적 인수자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주인수선택권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식의 저가매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시 과세될 여지가 없어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인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법인주주는 개

3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 소액주주는 지분비율이 1% 미만이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를 의미하고 있음

인주주와 달리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신주의 자본이득 상당액(신주의 공정가액-신주 인수가액)은 신주를 처분하기 전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다.

회사가 상환대가로 주식 또는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환대가는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신주인수선택권 과세방안

구분	과세요건		적용세목	과세소득
	특수관계	대주주 또는 금액기준		
개인주주	적용안됨	적용됨	상증법	(증자후1주당가액-신주인수1주당가액)×신주인수주식수
법인주주	적용안됨	적용안됨	법인세법	주식처분이익 (=공정가액-취득가액)

주: 대주주 :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이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 증여의제금액이 1억원 이상

2)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신주인수선택권을 보유한 주주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상환대가로 신주 또는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애초부터 신주인수선택권은 무상으로 부여하였는데, 상환 시점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을 유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상환대가로 주식 또는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환대가는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 포기로 인하여 획득하는 부는 적대적 인수자의 신주인수선택권 포기로 인한 부와는 별개이고, 상환대가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사외유출되는 것이므로 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배당으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라. 신주인수선택권의 소멸

신주인수선택권은 권리에 해당되므로,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은 과세대상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본질을 권리라고 간주하여
실제 권리가 행사되어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본고에서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 도입되는 경우의 조세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과세권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본고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법적·경제적 실질이 신주인수권 즉, 증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아 신주인수권에 대한 세법의 입장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의 가격은 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실제 1주당 가치가 행사가액을 상회한다면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취득한 주주는 그 차액만큼 자본이득을 향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신주인수선택권의 본질을 권리라고 간주하여 실제 권리가 행사되어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개인주주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납세의무를 져야 할 것이며, 법인주주의 경우 신주인수선택권 행사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 애초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유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만일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환대가를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IPF**

<참고문헌>

- 법무부 보도자료,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2009. 11. 9
- 신석훈,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운용에 대한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08-09, 한국경제연구원, 2008 a.
- _____,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 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연구 08-11, 한국경제연구원, 2008 b.
- 이광재, 『주식이동과세무』, 세경사, 2009.
- 정순섭, 「적대적 M&A와 기업방어전략」, 연태훈 편, 『기업경영권에 대한 연구: 실증분석과 제도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5.

Lee A. Sheppard, "IRS Will Allow Tax-free Creation of Poison Pills," *Tax Notes*, October 17, 1988.

_____, "Nothing at all; Letter Rulings Reveal New Approach to Poison Pills," *Tax Notes*, July 10, 1989.

Stephan M. Bainbridge, "Precommitment Strategies In Corporate Law : The Case of Dead Hand and No Hand Pills", *Journal of Corporation Law* 1, Fall 2003.

_____, "Unocal at 20 : Director primacy in Corporate Takeovers,"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006.



정책토론투리포트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 본 원고는 2009년 12월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COEX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 일 시 2009년 12월 22일(화) 14:00~17:00
- 장 소 COEX 컨퍼런스룸 327호

• 진행순서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축 사 장지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중앙대 교수)

14:20~16:3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이전오 한국세무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 ▶ 발 표 자 심태섭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교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 ▶ 토 론 자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성수용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전문위원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이준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안세준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가나다 순)

16:3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주제발표 요약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심태섭 /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교수)

1. 개요

- 국제 회계 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도 2009년 말에 확정됨.
 - 이에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므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우선,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분석함.
 - 이를 통하여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음.
-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법인세법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음.
 - IFRS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법인세법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움.
 - IFRS에 의한 경우 일부 비용계상이 어려워, 현재 결산조정항목을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함.
 - 현재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법인세법에서 준용

하는 것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기능통화에 대한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의 형식과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구하는 현행 체계를 계속 유지할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IFRS 도입에 따른 각 개별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법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음.
 - 보험수리 가정에 의한 중업원퇴직급여부채 인식은 세법상 도입이 어려움.
 - 일반기업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의 인정은 어려우나, 금융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계속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세금부담을 분납 등의 방법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각 자산의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의 손상차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개정이 필요함.
 -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상환우선주를 법인세법상 자본으로 분류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금융상품 등의 대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별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IFRS에서 금지한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속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기타 각 항목별로 필요한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함.

2.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IFRS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 대하여 의무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IFRS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회계당국과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측면에서의 준비는 충실히 되어 오고 있음.
-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측면에서 준비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이 원칙이며, IFRS 적용대상인 상장기업에 대한 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함.
 -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이 2009년 말에 확정되기에,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의 논의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
-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보고서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우선,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음.
 - 이미 IFRS를 도입한 EU국가의 사례를 분석함.
 - 이를 통하여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음.

3.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 우선,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함.
 - 공정가치평가
 - IFRS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많은 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정가치평가손익이 재무제표의 손익으로 반영이 됨.
 - 공정가치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미실현손익이므로 이를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기가 어려움.
 - 결산조정사항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항목을 결산조정이라 하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영업권)에 대한 상각비,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 등 여러 항목이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IFRS의 도입으로 기업이 이러한 결산조정항목을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계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
 - 이에 현재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의도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강제신고조정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 준용
 - 현재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K-IFRS 규정을 계속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준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의 기준체계 (Principle-based Standards)이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간에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현재의 관련 세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이에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검토하여 기업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개정되어야 함. 특히 자산·부채의 평가나 손익인식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기능통화

- 현재 K-GAAP과 K-IFRS에서는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세계화·글로벌화된 기업환경에서 기능통화를 도입하여 회계장부를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법인세법에서도 K-IFRS에 규정된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기능통화 적용범위나 과세소득의 산출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재무제표의 형식과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

- K-IFRS는 정형화된 재무제표의 형식이 없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기업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을 새로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라는 점을 법인세법에 보다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4. 개별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향

■ 각 개별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종업원급여 중 퇴직급여부채

- IFRS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하기에,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음. 이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화환산

-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미실현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현행 법인세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러나 은행업무에 속하는 외화의 취급을 과세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은행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외화환산손익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은 K-IFRS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 후입선출법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재고자산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법인세법에서도 향후 후입선출법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이렇게 할 경우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왔던 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

로 이러한 세부담을 일정기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IFRS에서는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전체 개별자산과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서로 상이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갖는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IFRS하에서 인식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중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 무형자산

- K-IFRS에 의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종류가 증가하였지만, 법인세법은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자산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K-IFRS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손상차손의 형태로 인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고조정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 상환우선주

- K-IFRS에 의하면 상환우선주는 의무적 상환 여부에 따라 자본이나 부채로 분류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됨.
- 많은 신종자본증권(hybrid securities)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판단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금융상품의 대손

- 금융상품의 대손과 관련하여 K-IFRS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의 인식이 가능함.
- 이와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일정한 기준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에 보다 합리적인 세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하여 매기 계속적으로 적립하며 법인세법상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K-IFRS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비상위험준비금 등은 거대손실에 대한 대비 등의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속적으로 적립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 현재는 기업회계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금액을 구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음.

- 현재 IFRS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현행 IFRS와 자국의 회계기준(US GAAP)을 일치하려는 협의를 진행중이므로 현재의 IFRS 규정 내용은 앞으로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와 같은 과세소득 산출체계에서는 앞으로 IFRS의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법인세법 규정을 재검토하여 개정 여부도 매번 검토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의 법적 안정성은 떨어짐.
- 이에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커지거나, 기업회계기준이 계속적으로 변동하게 된다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독립적 접근방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임.



토론 요약

법인세법 개정, 몇 가지 난제 극복되어야

곽인찬/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발표 논문에서 IFRS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 과정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시각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관한 몇 가지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 기업의 회계책임자 얘기를 들어보면 IFRS 도입에 대비한 세무 시뮬레이션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기업회계 따로 세무회계 따로 작성하는 것에 따른 납세순응비용 증가도 부담이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한 KT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KT의 경우 자회사가 30개 정도 된다고 한다. 30개의 회사에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직까지 세법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고충이 크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이 가지는 불확실성과 당혹감을 고려했을 때 세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분명 공감한다. 다만, 법인세 개정까지는 몇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중소기업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IFRS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그런데 상장사 1,700여개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IFRS 도입은 대기업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훨씬 더 힘들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 부담은 더 크다. 기존 회계감사가 일반적인 건강진단이라면 IFRS는 MRI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재정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꺼린다는 얘기도 있

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IFRS 도입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에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세법 개정은 중소기업의 반발을 극복한 이후에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IFRS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세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 자체보다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사실 내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세수(稅收) 확보에 있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일부 손질하기로 한 것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조치다. 또 국회는 고소득자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2년간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감세원칙을 거스르는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IFRS 도입이 과연 법인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업들은 IFRS 도입으로 세금이 늘지 않을까 걱정한다. 만약 'IFRS 효과'로 세금이 늘면 세법 개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거꾸로 세금이 줄면 세법은 어떤 형태로든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법인세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촉박하다. 2011년 IFRS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과연 1년 안에 입법예고, 상임위 심의, 본회의 가결 등 세법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기업회계와 기존 세법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발표 논문에 대한 질문이다. 첫째, IFRS 도입이 법인세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둘째, IFR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규칙 중심

이 아니라 원칙 중심 회계라는 점이다. 그런데 세법을 바꿔 세세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셋째, 회계기준원이 2009년 말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법인세법 개정 로드맵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올 연말까지 마련될 수 있는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후 세법 개정

안세준 /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장

2011년 상장기업 등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되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방향을 사전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화에 따른 세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기업 등에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만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면 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말까지 세법을 개정할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고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무의견을 발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지난 6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센터의 중간 보고서에 이미 실무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실무 의견이 최종보고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신고조정사항이 늘어나게 되면 세무장부와 회계장부를 이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에 대하여는 정책방향 전환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인세 신고서식의 작성상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세무장부와 회계장부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시에는 세무장부와 회계장부를 연계하여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장부와 회계장부의 연계성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세무장부와 회계장부를 이원화하고 있다는 미국의 법인세 신고서식을 보더라도 표지에는 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taxable income과의 조정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세무장부와 회계장부를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식으로 세무장부와 회계장부를 이원화할지 현재 방식으로 하되 신고조정사항만 늘리는 방식으로 갈지는 서식 작성상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세법 개정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 주신 한국조세연구원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회계처리기준 다른 기업, 적용 세법규정 구분

김찬홍 /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먼저 본 의견은 토론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회계기준원 또는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견은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에야 결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이전의 발표와 토론에서 계속하여 IFRS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동일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과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 IFRS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면 이로 인한 차이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동지배하의 거래와 같이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2~3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 없이 2011년부터 무조건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부터는 크게 세 가지 논점으로 나누어 발표내용과 관련된 본 토론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외감대상기업과 외감비대상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외감비대상기업이 적용할 세법규정과 외감대상기업이 적용할 세법규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외감비대상기업은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없거나 기업회계에 따른 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회계 목적과 tax 목적의 two book을 유지한다고 들었는데, 재무제표 공시가 필요 없는 기업은 tax-book만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에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two-book이 아니다. 즉, 외감비대상기업들은 주로 법인세법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무조정 필요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외감대상기업은 기업회계에 따른 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에서 회계감사의 주된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판정에 있으며, 감사필 재무제표의 정보는 당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사용된다. 이미 2009년부터 외감대상기업이 적용할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인 K-GAAP과 K-IFRS의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회계시스템을 유지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며, 실제로 적용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서로 다른 기업들에 동일한 세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외감대상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이 기업회계를 대폭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일시적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에 따른 조정은 그 차이가 향후 해소되는 차이(일시적 차이: 공정가치 평가 등)와 영구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차이(영구적 차이: 접대비 한도초과액, 벌금, 과태료 등)로 구분된다. 즉, 장기간(기업의 탄생과 소멸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회계상 누적손익과 세법상 누적과세소득은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행 세법의 적용(기업의 세무조정)상 어려움은 일시적 차이를 가져오는 양 기준의 차이 조정에서 비롯되며, 기업과 과세당국(국세청)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

셋째, 세법이 기업회계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을 모두 신고조정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즉, 결산조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므로써 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세법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평가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는 평가손익을 차별화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익은 세법에서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매도가능증권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자본의 구성항목)으로 처리한다. 현재의 손익계산서에서 이러한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후에 해당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게 되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던 금액이 당기손익에 반영(recycling)된다(다만, 아직 K-IFRS 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IFRS 9 '금융상품'에 따르면,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어 있던 평가손익누계액이 당기

손익으로 recycle됨이 없이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된다).

현재 세법에서 이러한 자산의 가치변동을 조정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계산 절차가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그리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어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증감액의 세효과는 법인세 회계를 통하여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됨을 고려한다면)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상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IFRS 9의 경우처럼 당기손익으로의 recycle 없이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기타 의견으로 K-IFRS 최초 연도의 과세소득 관련 경과조치(예, 후입선출법을 기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결손금소급공제(Loss Carry-Back)를 모든 기업에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로드맵 제시로 납세자 불안감 해소해야

성수용 /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전문위원

제Ⅱ장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본 보고서의 세부항목을 109개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하신 심태섭 교수님께 감사를 표한다.

첫째, IFRS는 회계학, 법학, 정책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된다. 따라서 IFRS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학제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발표자의 의견과 같이 로드맵의 제시를 통한 납세자의 불안감 해소는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IFRS의 도입에 앞선 로드맵에서 제시한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IFRS를 우선적·의무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도 아직 외감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개정에 관한 로드맵을 빨리 제시하여 납세자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IFRS에 따라 법인세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을 가져야 한다.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졌다고 하여 세부담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부담은 납세협력비용과 직접적인 세액의 변동을 둘 다 고려하는 개념으로 이 둘이 trade-off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둘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본 보고서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중도적 접근법이 타당

오윤택/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기업,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IFRS 도입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전면 개편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측면에서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해 준 한국조세연구원에 감사를 표한다.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은 우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74% 이상이 중도적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제일 쉬운 것은 독립적 접근법이겠으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를 간

섭하고 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중도적 접근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기준 설정 측면에서 기업회계와 세법의 기본원칙은 분명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기반하여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는 인식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은 세법에서 고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세법이 기업회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의 제안에 대부분 동의한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 평가의 경우 세법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기타 준비금의 설정과 관련하여 결산조정을 완화하고 신고조정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IFRS 적용기업이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세법에서 역시 이를 수용해야 하며, 다만 그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태여 세법에서 그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정신고서에 포함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세법 측면에서 IFRS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비상장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가 조화를 이루는 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거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세법 측면에서 IFRS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준재무제표 및 관련 서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분석 자료를 비롯한 세무조사 등

에 유용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이슈는 IFRS를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에 모두 도입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과연 개별 재무제표에까지 IFRS를 도입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정 담당자의 조정 업무에 대한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일선에서 이를 확신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IFRS 이용자에 대한 교육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적 접근방법이 타당할 것

이준규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게 되고 법인세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현행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서로 관련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방대하다는 면에서 볼 때 본 보고서의 논의 내용도 방대할 수밖에 없어서 연구자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연구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보고서의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상호관계는 독립적, 의존적, 중도적 접근방법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국가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 중도적 접근방법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중도적 접근방법을 계속 유지한다고 전제할 때 독립적 접근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토론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완벽하게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느 하나에 좀 더 가까운 방법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외적으로 한 두 가지는 중도적 접근방법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독립적 접근방법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가 설명한 것처럼 기업회계와 세법의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해 왔고 IFRS는 종전과 달리 원칙 중심이 되다 보니 굉장히 불명확해지고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 따라서 그것을 세법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은 독립적인 접근방법대로 가야 하지만, 독립적 접근방법이라고 해서 양자의 차이가 벌어져야 한다거나 장부를 반드시 2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법에서는 세법 입장에서 국제회계기준이 바뀌면 세수나 조세회피방지 문제, 과세형평을 따져서 큰 차이가 없다면 세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규정하면 된다.

지금 IFRS 관련 조세효과에 관하여 대기업이 느끼는 가장 불안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독립적 접근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발표자가 독립적 접근방법은 장부를 2개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장부는 1개로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현재의 결산조정을 신고조정으로 할 수 있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그러할 경우 단순신고조정으로 할 것인지 강제신고조정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단순신고조정으로 할 경우 조세회피 가능성이나 정정청구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

제에 있어서, 일단 단순신고조정으로 하되 일단 신고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확정결산기준이나 결산조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IFRS의 도입과 관련하여 세법을 개정할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K-IFRS를 도입하는 기업이 생겼고 조기에 도입하는 기업은 조세효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세제실에서는 적용대상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당사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IFRS의 조기 도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세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올해는 경과규정으로 IFRS를 도입함으로써 도입 전에 산출되었을 경우보다 세액이 증가하는 기업은 종전의 산출방법대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정도만이라도 우선 세법에 추가하여 조기 도입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이현석/대한상공회의소 전문이사

12월 중순에 대한상의가 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애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상장 중소기업들은 IFRS 도입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회계법인 컨설팅비, 전산시스템 교체비용”과 같은 도입비용 부담을 꼽았고 두 번째로 “IFRS 도입관련 세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본다면 IFRS 도입시 여기에 맞추어 세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자가 제시한 IFRS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부분 공감한다. 추가적으로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의견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방법은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 투자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라서 법인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감가상각과 무관하게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IFRS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 인정이 가능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회계기준 준용 사항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0.03~2%로 산정된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기업의 매출액 인식 시점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비 인정도 달라지게 된다. 가령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지만 IFRS에서는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기간 동안 매출액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기간 동안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인정이 어렵게 된다. 이처럼 IFRS 도입 여부에 따라 기업 매출액이 상이해지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발표자인 심태섭 교수의 의견과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언

급하지는 않겠지만, IFRS의 후입선출법 불인정으로 인해 정유회사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가증권 거래비용에 대한 IFRS와 법인세법의 규정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거래비용을 취득원가로 처리하지만 IFRS에서는 유가증권 분류에 따라 거래비용 또는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이러한 차이는 채권의 경우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주어 금액은 작으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무조정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거래비용 처리를 IFRS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IFRS상 자산감액손실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을 경우 감액이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파손·부패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자산감액손실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IFRS에서는 자산감액손실에 대해 감액손실 검토 시점, 인식 여부 결정, 검토단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기업회계기준보다 객관적 입증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FRS에 따라 자산의 감액손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토론회 주제와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상장 중소기업들의 IFRS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0.5%)은 IFRS의 도입 시기를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적 회계신인도, 조기 적용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도입 시기의 유보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이 부담하는 외부 컨설팅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로 나온 오윤택 대표의 의견처럼 IFRS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관계 기관과 같이 이러한 홍보와 교육활동의 추진을 검토하겠다.

법인세법 대응, 보수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

최원석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기본 목적 및 원칙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가 서로에게 지나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공정가치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은 납세자인 법인의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런 양자의 차이점 때문에 회계실무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법의 대응은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런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경우에 납세자인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정사항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역시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은 우선 각 항목, 성격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등 공정가치 평가를 폭넓게 도입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공정가치 평가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와 세무를 이원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가 구체적 적용방식의 차이이며, 과세소득에 큰 영향이 없다면 법인세법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은 단기·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측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기본방향과 향후 일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 규정들 중에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매출액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결산상 회계처리를 조건으로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규정들에 대해서도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재개정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법인세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추가적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법인세법이 보다 확정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독자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부채와 자본의 정의 및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법인세법상 원리에 부합하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양자의 관계에 대해 현행처럼 중도적 접근방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별도로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독립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할 것인지 개정된 법인세법을 운영해 가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9-23

요약

- 미국 하원은 11월 5일,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혜택을 연장·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 최초 또는 반복 구매자가 내년 4월 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리스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3일, 2008년 순이익이 EUR5백만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법인세 추가 분담금(one-time additional tax)을 부과할 것임을 발표함
- 중국은 과학 연구 및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구의 설비 구매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고 명확히 함
- 대만 재무부는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를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1. 미국 주택구입 세액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 연장

- 미국 하원이 11월 5일,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Home Buyer Credit)와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NOL carryback) 혜택을 연장·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당초 올해 11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날 의회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됨
 - 또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결손금 소급공제 혜택이 전체 기업으로 확대됨
- 동 법안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최대 \$8,000까지, 반복 구매자의 경우에는 최대 \$6,5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2010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말까지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8,0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한편 종전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주택에 과거 8년간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면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해 최대 \$6,5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최초 구매자와 반복 구매자 모두 소득금액이



\$125,000(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225,000)를 초과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

-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이하 “JCT”)는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08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이 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기업이 2008년 또는 2009년에 발생한 손실을 과거 5년간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또한 포함돼 있음

- 2009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용대상 기업을 연매출이 \$15백만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 그러나 금번 법안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임
- 동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섯 번째 연도의 이용가능 소득의 50%와 나머지 4개 연도의 이용가능 소득의 100%를 결손금과 상계 가능함
- JCT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확대로 향후 10년간 \$104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상기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재정적자의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임
- 0.2%의 추가적인 연방정부실업세의 부과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S회사와 파트너십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높임

- 전 세계 이자비용 배분 혜택(worldwide interest allocation benefit)¹⁾의 최초 시행일을 2017과세연도 이후로 연기함

2. 그리스 법인세 추가 분담금 부과

-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3일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회성의 법인세 추가 분담금(one-time additional tax)을 부과할 것임을 발표함

- 법인세 추가 분담금으로 약 EUR1억의 세수확보가 예상되며, 이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에 사용될 계획임

- 법인세 추가 분담금 상세내용

- 부과대상
 - 2008년 순이익이 EUR5백만을 초과하는 약 300개 기업
- 세율
 -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 순이익이 EUR5백만 초과 EUR1천만 이하 : 5%
 - ☞ 순이익이 EUR1천만 초과 EUR2천5백만 이하 : 7%
 - ☞ 순이익이 EUR2천5백만 초과 : 10%
- 납부
 - 8개월간 분납(8 monthly instalments)이 가능함
 - 단,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5%만큼 할인이 적용됨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기업 전체의 이자비용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 국가별로 배분한 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 본점을 둔 미국법인이 동경과 런던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본점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일본과 영국의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한 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수 있음.

3. 중국 연구개발기구 설비 구매 세수정책(2009. 10. 10)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등이 과학 연구 및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구 구매설비 세수정책》(재세[2009] 115호)을 발표함
-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수 면제 집행규정》(재정부·세관총국·국가세무총국령 44호)에 따르면 외국 연구개발기구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용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면제되는바, 동 통지에서는 이러한 조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또한 2008년 말로 종료됐던 중국산 연구개발설비 구입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부활시킴
- 본 통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시행됨

■ 동 개정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가 조건부 채권, 구조화된 상품, 증권화된 상품 등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8%로 인하함
- 대만은 외국인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가 대만 국내 법인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경우 20~30%²⁾의 세율로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함

4. 대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2009. 10. 28)

- 대만 재무부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대만 정부는 2010년부터 대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역시 2010년부터 인하하기로 함

2) 경제부 투자심의회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여 투자하였을 경우에 20%,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30%, 법인주주는 25% 적용



동향 09-24

요약

- OECD는 지난 11월 24일 Revenue Statistics 1965-2008을 출간하였음
 - 2008년 OECD 회원국의 (잠정)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이 45%를 초과하는 반면, 멕시코, 터키, 한국, 미국 등은 30% 미만으로 회원국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연방정부가 11월 9일 경제성장촉진법안을 승인함
 - 주요 내용은 자녀공제액 및 아동수당 인상, 영업용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확대, 단기숙박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상속세율 인하 등임
- 네덜란드 내각은 지난 11월 13일 현행 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주행량에 따른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에 승인함
 - 자동차세 과세방식의 변화로 교통혼잡 및 CO₂ 배출량 감소가 기대되고 있음

1. OECD

- OECD는 지난 11월 24일 Revenue Statistics 1965-2008을 출간하였음
 -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을 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7년의 경우 유럽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의 2개 국가가 45%를 초과하는 반면, 일본,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미국의 7개 국가는 30% 미만임
 - 2007년 OECD 전체의 조세부담률은 35.8%로서 1975~2007 기간 중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36%)을 보였던 2000년도에 비해 0.2% 낮은 수준임
 - OECD 30개 국가 중 2008년 잠정치율 발표된 국가는 26개 국가임
 - 잠정치율 발표된 국가 중 17개 국가는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에 조세부담률이 감소하였고, 9개 국가는 증가하였음
 - 2%p 이상 감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4.9%p), 스페인(4.2%p), 아일랜드(2.5%p)임
 - 조세부담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멕시코(3.1%p), 룩셈부르크(1.7%p)임
 - 2006~2007년 기간에 총조세에서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3.2%로 증가하였음
 - 스페인은 1.2%p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노르웨이는 1%p가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임

〈표 1〉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총조세/GDP)

(단위: %)

	2000	2006	2007	2008(잠정치)
캐나다	35.6	33.5	33.3	32.2
멕시코	16.9	18.3	18.0	21.2
미국	29.9	28.2	28.3	26.9
호주	31.1	30.6	30.8	n.a.
일본	27.0	28.0	28.3	n.a.
한국	22.6	25.0	26.5	26.6
뉴질랜드	33.6	36.6	35.7	34.5
오스트리아	43.2	41.8	42.3	42.9
벨기에	44.9	44.4	43.9	44.3
체코	35.3	37.1	37.4	36.6
덴마크	49.4	49.6	48.7	48.3
핀란드	47.2	43.5	43.0	42.8
프랑스	44.4	44.0	43.5	43.1
독일	37.2	35.6	36.2	36.4
그리스	34.0	31.2	32.0	31.3
헝가리	38.0	37.1	39.5	40.1
아이슬란드	37.2	41.5	40.9	36.0
아일랜드	31.3	31.7	30.8	28.3
이탈리아	42.3	42.3	43.5	43.2
룩셈부르크	39.1	35.8	36.5	38.3
네덜란드	39.7	38.9	37.5	n.a.
노르웨이	42.6	44.0	43.6	42.1
폴란드	32.8	34.0	34.9	n.a.
포르투갈	34.1	35.5	36.4	36.5
슬로바키아	34.1	29.4	29.4	29.3
스페인	34.2	36.7	37.2	33.0
스웨덴	51.8	49.0	48.3	47.1
스위스	30.0	29.3	28.9	29.4
터키	24.2	24.5	23.7	23.5
영국	36.4	36.6	36.1	35.7
OECD 평균	36.0	35.8	35.8	n.a.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8, 2009.

2. 독일 경제성장촉진법안 승인

- 독일 연방정부가 11월 9일 경제성장촉진법안(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을 승인함
 - 본 법안은 독일의 제3차 경기부양책으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자민당(FDP)으로 구성된 보수연정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조세감면책임
 -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자녀가 있는 개인, 기업, 상속인, 호텔·숙박업계로, 연간 EUR85억 상당의 조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녀공제액이 EUR1,932에서 EUR2,244(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EUR4,488)로 인상됨
 - 자녀양육 및 교육공제액이 EUR1,080에서 EUR1,260(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EUR2,520)로 인상됨
 -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이 첫째 및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EUR184(현행 EUR164)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EUR190(현행 EUR170)로, 넷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월 EUR215(현행 EUR195)로 각각 EUR20씩 인상됨
-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유권 변동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완화됨 - 개정 전에는 지분의 50% 이상이 5년 내에 직·간접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했으나¹⁾, 개정 후에는 동일 기업집단

1) 25% 이상 50% 이하의 주식이전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분적으로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됨



내에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졌으며, 지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밀적립금(hidden reserve)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짐

☞ 이 때 비밀적립금(hidden reserve/stille Reserven)이란 주식의 구입가격에서 해당 회사의 세무상 자본액을 차감한 (+)의 잔액을 말함

- 또한 개정 전에는 2010년 이전에 파산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파산의 경우 기한의 제한 없이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해짐

• 둘째, 한시규정으로 운용되던 지급이자공제 특례규정이 영구규정으로 전환됨

- 개정 전에는 2007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순이자비용이 EUR3백만 이하일 경우 특례조치에 의해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에 있어서는 순이자비용이 EUR1백만 이하여야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했음²⁾

- 개정 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순이자비용이 EUR3백만 이하이면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함

• 셋째, 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

- 개정 전에는 EUR150 이하의 영업용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이 가능했으나, 2010년부터는 EUR410 이하의 영업용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이 가능해짐

■ 기타 세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세: 영업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정 전에는 부동산 임차료의 83.75%가 공제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이 비율이 87.5%로 인상됨

• 부가가치세: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제공하는 단기숙박서비스업에 대해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상속세

- 사업용 자산에 대한 85%의 상속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³⁾

- 향후 5년간(현행 7년간) 과거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계속해야 함

☞ 상속 당시 고용수준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상속 이후 5년간 급여 총액이 상속일이 속한 연도의 급여 총액의 400%(현행 65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용 자산 중 단순 관리되는 자산(즉, passive asset)의 비율이 50% 이상 되어서는 안 됨

- 상속 이후 7년(현행 10년)간 사업이 계속되고, 상속 이후 7년(현행 10년)간 급여 총액이 상속일이 속한 연도의 급여 총액의 700% 이상이며, 사업용 자산 중 단순 관리되는 자산(즉, passive asset)의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음

- 제2과세등급(즉,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1대 후손,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⁴⁾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현행의 30~50%에서 15~43%로 인하됨

2) 독일의 경우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특정 과세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함. 단, 순이자비용이 EUR1백만(개정 후에는 EUR3백만) 이하이면 전체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가능함

3) 독일은 기업상속 및 증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의 85%를 상속세 과세기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4) 독일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과세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표 2〉 독일의 상속세율

과세대상 취득재산의 가치(EUR)	세율			
	제1과세등급 ¹⁾	제2과세등급 ²⁾		제3과세등급 ³⁾
		개정 전	개정 후	
75,000까지	7	30	15	30
300,000까지	11	30	20	30
600,000까지	15	30	25	30
6,000,000까지	19	30	30	30
13,000,000까지	23	50	35	50
26,000,000까지	27	50	40	50
26,000,000이상	30	50	43	50

주: 1) 배우자, 자녀 및 입양자녀, 자녀 및 입양자녀의 후손, 사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부모와 그 선대 포함

2) 제1등급에 속하지 않는 부모와 그 선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1대 후손, 양부모, 사위 및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

3) 모든 다른 재산의 취득자 및 특정 목적과 연계된 증여의 경우

3. 네덜란드 자동차세 개정 검토

- 내각은 지난 11월 13일 현행 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주행량에 따른 과세방식(pay-as-you-drive)을 도입하는 법안에 승인함
 - 동 법안의 취지는 교통혼잡과 CO₂ 배출량을 줄이는데 있음
 - 이는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2012년 발효될 예정이다
- 자동차세 개정법안
 - 주요 내용
 - 자동차세⁵⁾ 및 자동차취득세⁶⁾를 폐지하고 대신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라 과세함

5) 현행 자동차세는 차량유형, 중량 및 소비연료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고 있음

6) 현행 자동차취득세는 자동차 소매가격 중 약 25% 정도에 해당함

• 세율

- 기초세율은 차량의 크기, 중량, CO₂ 배출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혼잡시간에 또는 혼잡도로에서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향 조정됨

- 2012년 평균 운전자의 기초세율은 €0.03/km로, 매해 인상되어 2018년에는 €0.067/km가 적용될 예정임

• 적용제외 대상

- 버스, 택시, 장애인용 차량, 농기구, 오토바이, 구형 자동차의 경우 주행량에 따른 과세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정보 확보방안

• 중앙 과세당국은 모든 차량에 장착된 GPS 장치를 통해 개별 차량의 이동시간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음

-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게 됨

• 한편,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며 정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기대효과

• 자동차세를 주행량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통행량 감소(15%), 교통혼잡 감소(50%), 교통사고 감소(7%) 및 CO₂ 배출량 감소(10%)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개정 법안으로 약 60% 정도의 운전자에게 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행량이 많고 주로 혼잡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조세부



담은 증가하여 총조세수입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동향 09-25

요약

-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8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고용창출을 위한 감세정책을 제안함
 -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세금 감면과 사회 인프라 건설 투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안함
-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2009 예비예산안(2009 Pre-Budget Report)을 의회에 제출함
 - 주요 세법개정 사항은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21%→22%) 연기, 은행업에 대한 과세실행규범 발행, 재량 상여금에 대한 급여세(50%)의 한시적 도입,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17.5%→15%)의 종료 등임
-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직접세 및 간접세 관련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에 3단계 누진세율체계 도입, 투자소득 세율 인상(15%→18%), 부유세 도입, 부가가치세율 인상(24.5%→25%) 등임

1.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창출 방안 제안

-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8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실업문제의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기부양법에 따른 일부 감세조치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이외에도 사회 인프라 건설 투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cash for caulkers) 등을 제안함
-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한 감세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정 유형의 상각가능 자산에 대해 50%의 추가적인 상각을 허용하고 있는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2010년(현재는 2009년까지 적용)까지 연장함
 -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250,000의 범위 내에서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있는 감가상각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10년(현재는 2009년까지 적용)까지 연장함
 -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1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개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주식의 매각에서 얻은 이득의 75%를 총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조치의 적용기한(현재는 2010년까지 적용)을 연장함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감세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음
 - 백안관은 현재 고용세액공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입법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함
 - 중소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수에 기초해 고용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부터 급여세 payroll tax)의 감면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에 있음
- 美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법안에 관해 조만간 표결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美 의회는 고용대책을 위해 증세나 다른 지출을 삭감할 경우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예산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함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구제자금 상환으로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으로 인한 손실이 당초의 예상보다 \$2,00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2. 영국 2009 Pre-Budget Report

- 재무장관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2009 예비예산안(2009 Pre-Budget Report)¹⁾을 의회에 제출함
 - 2009 예비예산안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4년 내에 정부 차입금(borrowing)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업과세 및 개인과세 관련 주요 세법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예비예산안(Pre-Budget Report)은 차기연도의 봄에 예정된 본예산이 있기까지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경제상황 및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과세(business taxation) 분야

- 법인세율
 -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계획(21% → 22%)을 1년간 연기하여 2010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21%를 계속 적용함
- 은행업 과세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 은행업 과세와 관련하여 은행이 법 형식뿐만 아니라 법 정신 역시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과세실행규범을 발행함
- 특허권 소득
 - 2013년 4월부터 특허권 소득에 대해 법인세 저세율을 적용함
- 연구개발비 공제(R&D relief)
 - 연구개발비 공제요건 중 공제신청 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적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함

-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및 건축조합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25,000를 초과하는 재량 상여금(discretionary bonus)에 대해 50%의 급여세를 부과함
- 국외 탈세(offshore evasion)
 - 특정 지역에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납세자에 대해 도입된 국세청(HMRC) 통지의무를 별도의 가산세 제도(penalty regime)와 함께 운영함
- 연금공제(pensions relief)
 - 2011년 4월부터 총소득이 £150,000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공제를 제한함
 - 총소득은 고용주 부담분을 포함한 모든 연금불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2011년 4월부터 종업원, 고용주,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보험료율을 0.5% 인상함

■ 개인과세(individual taxation) 분야

- 개인소득세율
 - 2010년 4월부터 소득세 과세구간에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추가하여 £150,00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함²⁾
- 종업원에 대한 급여세(payroll tax)
 - 현재 영국에서는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간접세(indirect taxation) 분야

- 부가가치세(VAT)
 -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17.5% → 15%)가 2009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17.5%의 표준세율로 복구함

3. 아이슬란드 세법개정안

-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직접세 및 간접세 관련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이는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2010 예산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세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2) 영국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37,400	20%*	
37,400 ~ 150,000	40%**	40%**
150,000 ~		50%***

* 저축소득에 대해서는 £ 2,440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 배당소득의 경우 32.5%의 세율을 적용

*** 배당소득의 경우 42.5%의 세율을 적용

■ 직접세 분야

- 개인소득세제 개편
 - 개인소득(투자소득 제외)에 대해 현행 적용되고 있는 22.75%의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3단계 누진세율 체계(three-tiered system)를 도입함³⁾

〈표 1〉 아이슬란드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ISK)	세율(%)	
	현행	개정안
~ 200,000	22.75	24.1
200,000 ~ 650,000		27
650,000 ~		33

-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15% → 18%)하고, 첫 ISK100,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함
- 부유세(net worth tax) 도입
 - 순부(net wealth)가 ISK90million을 초과하는 경우 1.25% 세율로 부유세를 부과함

■ 간접세 분야

- 부가가치세 세율을 24.5%에서 25%로 0.5%p만큼 인상함
- 자동차세, 석유세, 담배세를 인상함
- 탄소세(special carbon fee)를 도입함
- 한시적으로 전기세를 도입하고 이와 아울러 온실 및 추운 지방의 가구에 대해 특별환급(special refunds)을 적용함

동향 10-01

요약

- 미 연방하원이 총 310억달러 규모의 '2009 조세 감면연장법안'을 통과시킴
 - 이번 조치로 R&D공제를 포함해 2009년 말로 만료 예정이던 40여 개의 조세감면조항이 1년간 연장됨
- 프랑스는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에서 탄소세 도입을 비롯하여 저에너지소비 건물에 대한 세제혜택 등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다양한 조세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2010 예산안을 발표함
 - 세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창업회사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에너지효율 설비에 대한 가속자본 공제 적용대상 확대, 고소득자에 대한 최소유효세율 인상(20% → 30%), 부가가치세율 인하(21.5% → 21%), 탄소세 도입 등임

1. 미국의 2009 조세감면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

- 美 연방하원이 총 310억달러 규모의 '2009 조세감면 연장법안(Tax Extenders Act of 2009)'을 12월 9일

3) 참고로,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소득세 외에 시세(municipal tax)가 부과되는데 이는 2009년 시별로 11.24~13.03%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있음



통과시킴

- 이번 조치로 R&D공제를 포함해 2009년 말로 만료 예정이던 40여 개의 조세감면조항이 1년간 연장됨
 - 동 법안에는 향후 10년간 개인에 대한 50억달러의 조세감면과 기업에 대한 170억달러의 조세감면이 포함돼 있음
 - 이 밖에도 기부행위 장려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특별재난지역의 구호, 친환경차와 대체연료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70억달러 규모의 조세감면프로그램을 1년간 연장해 실시기로 함
- 조세감면 규모가 가장 큰 조항은 첨단기술기업 및 제약업체에 관한 연구공제(research credit)로 총 70억 달러임
- 그 다음은 식당 및 소매점, 적격 임차인의 개량비에 대해 15년간 정액상각을 허용한 조세감면 조항으로 감면규모는 54억달러임

〈표 1〉 일몰기간 연장 법안

구 분	주요 내용	세수효과(\$억) ¹⁾
I. 전통적인 조세감면 조항	A. 개인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	
	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반판매세 (general sales tax)에 대한 공제조항의 연장	18.46
	②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공제 조항의 연장	14.60
	③ 적격 수입료 및 관련 경비에 대한 조정전 공제 (above-the-line deduction) 조항의 연장	15.29
	④ 초·중등교사의 특정 경비에 대한 조정전 공제 (above-the-line deduction) 조항의 연장	2.28
	B.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	
	① R&D공제 조항의 연장	69.66
	② Active financing을 Subpart F(CFC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연장	39.23
	③ 특수관계가 있는 피지배 외국법인 간의 지급금에 대한 투시조항(look-through treatment)의 연장	5.74
	④ 적격 임차개량자산 및 식당건물, 소매점의 개량비에 대한 15년간의 정액상각조항의 연장	53.90
	⑤ 모터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기장에 대한 7년간의 정액상각 조항의 연장	0.45
	⑥ 철도유지비공제 조항(railroad track maintenance credit)의 연장	1.65
	⑦ U.S.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물에 대한 손비인정특례 조항의 연장	0.51
	⑧ 재개발용 환경복구비에 대한 손비인정특례 조항의 연장	1.59
⑨ 광산구조팀의 훈련비공제 조항의 연장	0.01	
⑩ 첨단광산안전장비에 대한 특별상각 선택 조항의 연장	0.05	
⑪ 재향군인에 대한 고용주임금공제 조항의 연장	0.04	
⑫ 농업용 기계장치 및 장비에 대한 5년간 상각 조항의 연장	-	
⑬ 규제대상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에 대한 특례 조항의 연장	0.94	
⑭ 한계 유정(油井)에 대한 감모상각특례조항의 연장	1.04	

구 분	주요 내용	세수효과(\$억) ¹⁾
I. 전통적인 조세감면 조항	C. 기부금공제	
	① 보존 목적의 부동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기부금공제 조항의 연장	1.82
	② 식료품 재고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기부금공제 조항의 연장	0.78
	③ 공공학교에 대한 서적 재고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기부금공제 조항의 연장	0.31
	④ 교육 목적의 컴퓨터장비의 법인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기부금공제 조항의 연장	1.95
	⑤ 납세자 1인당 \$100,000까지 개인퇴직계좌에서 면세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5.91
	⑥ 면세단체가 등록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임대료·사용료·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0.2
	⑦ 특정한 재개발용 부지의 매각 또는 교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수익사업에서 배제하는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0.47
	⑧ 재산을 기부하는 S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0.37
	D. 기타 조항	
인디언고용공제 조항의 연장 등	5.05	
II. 지역사회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조항	① 자치지구(Empowerment Zone)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3.81
	② 지역사회 회복 프로그램(Renewal Communities)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7.86
	③ 신규시장(new market)세금공제 조항의 연장	14.02
	④ 콜롬비아 특별구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0.17
	⑤ 뉴욕 자유지역(New York Liberty Zone)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3.18
	⑥ 카트리나 허리케인 피해지역의 종업원에 대한 일자리세액공제 조항의 연장	0.07
	⑦ 걸프 폭풍 피해지역(Gulf Opportunity Zone)의 역사적 구조물의 복구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는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0.25
	⑧ 州주택기구(state housing agencies)가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대신에 동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4.71

구 분	주요 내용	세수효과(\$억) ¹⁾
III. 특별재난 지역의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①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대한 우발손실 공제의 확대 및 강화 조항의 연장	7.28
	② 적격 재난경비에 대한 손비인정특례 조항의 연장	0.32
	③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특정 손실에 대해 5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1.29
	④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대한 주택채권(mortgage revenue bond)의 제한 완화 조치 연장	0.63
	⑤ 적격 재난재산에 대한 추가상각 조항의 연장	0.25
	⑥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경비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의 손비인정특례 조항의 연장상기 추정액에 포함	4.71
IV.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조항	① 바이오디젤 및 재생 디젤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10.08
	② 중형 하이브리드에 대한 대체자동차공제 조항의 연장	0.07
	③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및 프로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의 연장	1.25
	④ 전자변속기의 판매에 관한 과세특례 조항의 연장	-

주: 1) 10년간 추정치
 자료: House of Representatives' Ways and Means Committee

- 한편 동 법안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수조달 방안을 제시함
 - 역외계좌신고의무의 강화를 포함해 역외 탈세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77억달러의 세수를 조달함
 - 펀드매니저가 받는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자본이득이 아닌 통상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246억 달러의 세수를 조달함¹⁾

1)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자본이득에 비해 고율의 소득세율이 적용됨



2.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 - 환경부 문 추가

-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탄소세의 도입²⁾ 외에 여러 조세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
 - 저에너지소비 건물(low energy consumption building)³⁾에 대해 다음의 세제혜택을 도입함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해 취득가액의 25%(2010년), 20%(2011년, 2012년)를 9년에 걸쳐 균일하게 안분하여 세액공제함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첫 12개월 동안은 대출이자의 4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2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VAT)
 - 에어컨에 적용되는 5.5%의 저세율을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함⁴⁾
- 소비세(excise taxes)
 - 연료소비세를 행정지역별로 차별화함
 - 지방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디젤은 EUR1.35/hectolitre, 가솔린은 EURO.73/hectolitre를 한도로 부과토록 함
 - 관련 세수는 교통수단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사용될 계획임

3. 아일랜드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

-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을 발표함
 - 2010 예산안상 세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법인세 분야
 - 법인세율
 - 12.5%의 법인세율은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그대로 유지함
 - 창업회사(start-up companies)에 대한 조세감면
 - 2009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개시 후 첫 3년 동안 EUR40,000를 한도로 사업소득,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 개정안에서는 이를 2010년 사업개시 법인에까지 연장 적용함
 -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scheme)
 - 에너지효율 설비에 대한 가속자본공제 적용대상에 냉장 시스템, 전기기계 시스템 등을 추가함
 -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 첫해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PRSI)를 전액 면제함
 - 이를 위해 EUR3천6백만을 고용주 직업장려계획(Employer Jobs Incentive Scheme)에 할당함

2) 2010 재정법안에서 탄소세 도입 관련 내용은 '동향 09-19'를 참조할 것

3) 프랑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2013년부터 건물 건축시 저에너지소비 요건(BBC standard)을 의무화할 예정임

4)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9.6%가 적용되고 있음

■ 소득세

- 고소득자에 대한 최소유효세율(minimum effective rate)
 - 2007년부터 연간 과세소득이 EUR500,000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 최소유효세율로 20%가 적용되어 왔음⁵⁾
 - 2010년부터는 연간 과세소득이 EUR400,000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유효세율을 30%로 인상함⁶⁾

■ 기타

- 부가가치세(VAT)
 - 201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1.5%에서 21%로 인하함
- 탄소세(carbon tax)
 - 탄소세를 톤당 EUR15의 세율로 도입함
- 자동차등록세
 - 2010년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을 폐기하고 CO₂ 배출량이 낮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EUR1,500를 한도로 자동차등록세를 면제함
 - 또한 전기차량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량(EUR 2,500의 한도 적용)에 대한 자동차등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함

5) 연간 과세소득이 EUR250,000~EUR500,000인 경우 최소유효세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연간 과세소득이 EUR250,000 미만인 경우 최소유효세율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음

6) 연간 과세소득이 EUR125,000~EUR400,000인 경우 최소유효세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연간 과세소득이 EUR125,000 미만인 경우 최소유효세율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음



정책흐름

-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
- 2010년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
- 2010년 예산 배정계획 및 집행지침 확정, 통보
-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 1. 1 시행
-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 본 자료는 201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그간의 경제적 성과

① (저소득층 금융상품 보급) 저신용 서민층 및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용 예금 및 보험 상품 개발·보급

- (저신용 서민층 예금상품)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에게 특별 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 개발 보급(10. 4월)

*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 300만원 이하 금액을 1년간 가입

(기본금리 3.0%+특별 우대금리 7% 추가 → 총 연10% 금리 지급)

- (저소득층 소액서민보험)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 3.5만원 (본인부담 1만원)인 상품 보급

*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하여 보험료 보조(23억원)

* 보장범위(안) : 상해 사망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 상해 입원시 입원의료비의 90%, 상해 통원시 통원의료비 전액 지급

2. 보육·교육 지원 확대

① (둘째아 무상보육* 확대) 둘째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의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1인당 최대 월 27만원 추가 혜택)

* 영유아보육료·유아교육비의 정부지원 기준다가 전액을 지원한

다는 의미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가구

②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보육료 지원대상 산정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가구(약 1천가구)에 대해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지원**

* (09) 4인가구 기준으로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436만원 가구까지 지원 → (10)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498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 소득하위 50% 이하(4인가구 기준 258만원) 가구 0세아에 대해 아이돌보미 파견비(월 58만~69만원) 지원

③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등에게 설치·운영비용 지원 수준을 확대

* 시설전환비 지원 확대 : (사업주) 1억원 → 2억원, (사업주단체) 2억원 → 5억원

유구비품비 지원조건 완화 : 5년 단위 5천만원 → 3년 단위 3천만원

설치 용자지원 한도 인상 : 5억원 → 7억원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7분위 이하 가정의 C학점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취업후 일정소득 발생시점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

* 현재는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

고,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의무 발생

- * 고소득계층인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은 현행 대출방식 적용
- * '10년 상반기 중 관련법 국회통과시 '10. 2학기부터 시행 예정

3. 의료복지 강화

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장애인·임신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10. 1월) 심장·뇌혈관질환자 : 10% → 5%, 결핵환자 : 20%(입원), 30~60%(외래) → 10%

('10. 7월) 중증화상환자 : 20%(입원), 30~60%(외래) → 5%

-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 병용투약 항암제, 유방암·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B형간염 치료제, 건선·류마티스 치료제, 빈혈 치료제 등 급여 적용 확대 ('10. 10월)

* 척추 및 관절질환 관련 MRI 검사에 대한 급여 확대('10. 10월)

- (취약계층 부담 완화)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10. 10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20만원 → 30만원, '10. 4월)

② (치매예방관리 강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월3만원) 지원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자녀를 희망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신규 지원**

* (09)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471만원, 1.8만건) → (1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가구 기준 481만원, 2.2만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대해 1회당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시술비 지원(4만건)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①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자립자금(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 지원

* 2~3년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을 창업·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 가능(단, 탈수급 못하는 경우 적립금 미지급)

*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 (09) 월 132.6만원 → ('10) 월 136.3만원

②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 게 지급중인 현행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 ('10. 7월)

- 수혜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존 대상에 대한 지급액도 월 2만원 인상

	장애수당(현행)	장애연금
■ 지급대상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지급인원	23만명	33만명
■ 지급월액 (기초/차상위/신규)	13/12/0만원	15/14/9만원

③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급여액 인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363만명 → 375만명)하고 급여액 인상

* 소득기준(노인 1인, 월환산소득) : (09년) 68만원 → (10년) 70만원, 대상

* 급여액(매월) : (09년) 8.8만원 → (10년) 9.1만원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① **(자영업자 실업급여 도입)** 일정규모 이하(예 : 종업원 50인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허용

*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의 50%를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

② **(선진형 스마트숍 지원)** 골목수퍼 등 재래 점포에 상권 분석·개선 방향 등 컨설팅 및 리모델링비 등 지원

* 점포당 종합컨설팅 500만원 이내, 리모델링비(옹자) 1억원 이내 지원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대)** 가입대상을 현행 1년 이상 사업 운영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부여(10년까지 한시 지원키로 한 일몰제 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①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확대)** 지원대상을 04. 1. 1 이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 시작 1년 이상인 경우로 확대

*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제 법정시행일 전까지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 지원

② **(중소수출기업 지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을 통해 4년 내 500만불 이상 수출기업으로 성장 지원

* '10년 500개 기업에 대해 총보증 500억원, 보험 500억원 지원

7. 농·어업인 지원 강화

① **(농어업인 복지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연간 39만원 → 43만원까지) 및 영농도우미

* 지원요건 완화(70세 이하 → 75세) 등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도우미 인건비 지원(10일 이내)

② **(농지매입사업* 기준 완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을 완화(4천만원 → 3천만원 이상)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

8. 국민 편의 증진

①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 수도권과 영동·호남축 전 노선으로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09. 11월부터 시행된 시범운행은 수도권(서울, 고양, 의정부, 용인 등)과 영동, 호남간 25개 노선에 대해 월~목요일 8:00~20:00간 운영

②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완공('10. 12월)으로 서울~부산 간 이동시간 단축 가능(2시간 40분 → 2시간 18분)

③ **(인터넷 우편서비스 확대)** 우체국 등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구입하고,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도입

• (온라인우표제도) 인터넷을 통해 해당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개인 프린터에서 우표를 출력하여 부착 후 인근 우체통에서 발송

• (온라인 내용증명제도*)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접수받아 우편물을 제작하여 수취인에게 우편물

배달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배달(신청, 재발급, 열람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⑥(여권발급 편의 제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전국 168개 지자체에서 233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토록 개선

⑦(생활민원 온라인 일괄서비스) 이사, 출생·사망, 개명 등 여러 기관에 걸친 15종의 생활민원* 업무를 한번에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이사,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출생, 교육, 취업, 고용안정(실업), 산재보험, 자동차, 혼인, 소자본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등

* 이사의 경우 이사 후 기본주소 변경(7종), 사회복지(7종), 학교(3종), 자동차(5종) 등 총 22종의 관련 민원이 발생

9. 세제지원 확대

①(월세 소득공제)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 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②(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15% → 20%)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대상 및 기간*을 확대

* 이월공제 대상을 현행 법인·개인 사업자에서 근로소득자까지 추가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요약)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억원)
1-1	[서민금융 활성화] ■ 저신용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보급(연 10% 금리 지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	'10. 4월	-
2	■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 서민보험 보급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10. 1월	23
3	■ 저소득·저신용층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10년중	-
2-1	[보육·교육 지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 교육 대상 확대(소득하위 60% 이하 → 7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10. 3월	156
2	■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월 436만원 → 498만원 이하)	월소득 인정액 498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10. 3월	96
3	■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10. 1월	44
4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시설전환비: 1억~2억원 → 2억~5억원, 설치용자: 5억원 → 7억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등	'10. 1월	189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소득 7분위 이하	'10. 2학기	3,395
6	■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교사, 학생, 학부모	'10. 3월	-
7	■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 학교로 확대(돌봄교실: 4,172개 → 6,172개)	초등학교 저학년생	'10. 3월	400
8	■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유치원생	'10. 3월	-
3-1	[의료 복지 강화]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 부담률 경감(10% → 5%)	심장·뇌혈관 질환자	'10. 1월	360
2	■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20, 30~60% → 5%)	중증화상 질환자	'10. 7월	80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원)
3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20, 30~60% → 10%)	결핵환자	'10. 1월	210
4	■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항암제 투여환자	'10. 10월	2,120
5	■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10. 10월	870
6	■ MRI 보험급여 확대 (척추, 관절질환)	척추·관절질환 환자	'10. 10월	890
7	■ 치료재료 급여 전환	일반국민	'10. 1월	970
8	■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장애인	'10. 10월	400
9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부	'10. 4월	600
10	■ 치매조기검진 실시 보건소 확대(192개 → 전국 모든 보건소)	일반노인	'10. 1월	13
	■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해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 규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60세 이상)	'10. 4월	67
11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3등급 치매노인의 시설입 소 허용 등)	치매노인	'10. 1월	150
	■ 치매노인 인지개선 프로그 램 및 경증노인 건강개선 프로그램 실시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10. 7월	100
12	■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인공 수정 시술비 신규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10. 1월	133
4-1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최저생계비의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초과시 희망키움통장 에 2~3년간 자립자금 적립 지원	70% 이상인 기초수급자	'10. 1월	249
2	■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월 9만 ~15만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중증장애인	'10. 7월	1,474
3	■ 기초노령연금 대상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대상기 준 68만원 → 70만원, 지급 액 8.8만원 → 9.1만원)	월70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10. 4월	2,000
4	■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 3%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로 인정 등)	장애인	'10. 1월	-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원)
5	■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 료 감경(기초수급자, 저소 득 한부모가족, 중증장애 인, 미성년자 등)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10. 1월	-
6	■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 기준가액의 80% → 90% 지원)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	'10. 1월	1,212
7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 교 유급식 무상 지원 대 상을 차상위 계층 초등학 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생 등	'10. 1월	296
8	■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계 비용 지원(그린벨트지정 당시 거주가구 연57만원 등)	개발제한 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도시 평균소득 이하 가구	'10. 3월	154
9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 상금제 도입	일반국민	'10. 7월	-
10	■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 금제 도입(월3만원 범위 내 저축금액만큼 매칭지원)	부상 4등급 이상 교통 사고자의 18세 미만 자녀	'10. 상반	-
11	■ 최저임금 인상 (시급 4,000원 → 4,110원)	일반 근로자	'10. 1월	-
12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 요건 완화(180일 미만 취 업 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 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 참시 기간 연장 등)	실직자 등	'10. 1월	1,914
13	■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 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 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 까지 포함)	직업훈련 수요자	'10. 4월	20
14	■ 보금자리주택 거주무기 간(5년) 마련	무주택 서민	'10. 4월	-
5-1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일정규모 이하 자영업자		
	■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 른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 입 허용		'10. 7월	-
2	■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 숍으로 지원(점포당 건설 팅 5백만원, 자금융자 1억 원 이내 등)	골목수퍼 등 재래 점포 상인	'10. 4월	1,110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원)
3	■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 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외국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10. 상반기	-
6-1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04년 이후 사업자 → 1년미만 사업자)	종업원 20인 미만 중소기업	'10. 1월	36
2	■ 중소수출기업에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 (500개 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 수출기업	'10. 6월	1,000
3	■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 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외국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10. 상반기	-
4	■ 중소기업 기술료 신용카 드 납부제 시행(최대 12 개월까지 할부 납부 가능)	중소기업	'10. 1월	-
5	■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 업체에 대한 계약 보증금 면제 기준(3천만원 → 5천 만원) 확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10년중	-
6	■ 산업단지 내 경미한 토지 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 (소요기간 : 3개월 → 1개 월 단축)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년중	-
7	■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일반국민 등	'10. 4월	-
8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 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허용,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해양레저 등 관련 사업자	'10. 4월	-
7-1	[농어업인 지원 강화]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39만원 → 43만원, 영농도 우미 지원요건 완화: 70세 이하 신청가능 → 75세)	농어업인	'10. 1월	1,854
2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요건 ■ 완화(부채기준 4천만원 → 3천만원 이상 등)	농민	'10. 1월	2,400
3	■ 농업 관련 재해보험 대 상 확대(농작물 : 20 → 25종, 가축 : 13 → 14, 어류 : 1 → 2)	농어업인	'10. 1월	1,029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원)
8-1	[국민 편의 증진] ■ 고속버스환승 확대 (호남. 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 → 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	일반국민	'10. 상반기	-
2	■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 통(서울~부산간 이동시 간 단축 : 2시간 40분 → 2시간 18분)	일반국민	'10. 12월	-
3	■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일반국민	'10. 하반기	-
3	■ 온라인 내용증명제도 도입	일반국민	'10. 상반기	-
4	■ 전·출입 신고시 우편물 전송서비스 제공	일반국민	'10. 하반기	-
5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자동인출기 등 온라인 납부,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납부)	일반국민	'10. 하반기	-
6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 드 납부	일반국민	'10. 1월	19
7	■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168개 → 233개 지 자체로 확대)	일반국민	'10. 1월	22
8	■ 한·러 단기복수사증 발 급조건 완화(발급기간 : 14 → 5~10일, 복수사증 유효 기간 : 최장 2→5년)	일반국민	'10. 상반기	-
9	■ 이사, 사망, 개명 등 생활 민원에 대해 온라인 일괄서비스 추진	일반국민	'10년중	7
10	■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제공 확대(온라인 신청·전자 발급 종류 확대, 정부민원 포털 확대 등)	일반국민	'10. 1월	81
11	■ 채택창업시스템 운영	창업자	'10. 1월	-
12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 리제 시행	일반국민	'10. 6월	-
13	■ 영월 등 5개 군에 도시가 스 신규 공급(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주민	'10년중	-
14	■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 진(울진, 단양, 강진군)	울진, 단양, 강진군 주민	'10. 상반기	90
15	■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 원측량)를 측량 현장에서 즉시 교부	일반국민	'10. 1월	-

	지원 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원)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도 발급 편의 제고 (발급기관을 읍, 면, 동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시행) 	일반국민	'10. 1월 '10. 5월	-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문화 예술교육 지원 대상 확대(소외계층 중심 2.0만명 → 일반시민 포함 3.0만명) 	일반국민	'10. 3월	114
9-1	<p>[세제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 월세 세입자	'10. 1월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 15 → 20%) 	일반국민	'10. 1월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공급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2년까지 연장 	공장, 광산 종업원 및 학생	'10. 1월	-
합 계				26,347

2010년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

* 본 자료는 2010년 1월 5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및 노동환경예산과에서 발표한 「2010년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10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

- '10년 복지지출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2,066억원 증액
- 최종 81.2조원으로 '09 본예산 대비 8.9% 증가

(단위: 억원)

	'09년		'10년		
	본예산	추경	정부안(C)	국회확정(D)	증감액(D-C)
복지지출(A)	745,893	804,151	810,398 (8.6%)*	812,464 (8.9%)*	2,066
총지출(B)	2,845,339	3,017,527	2,917,804 (2.5%)*	2,928,159 (2.9%)*	10,355**

* '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유가완충금 증액 7,000억원 제외시 3,355억원 증가

- 주요 증액내용
 - 긴급복지 : +50억원 (529억원 → 579억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 +411억원 (신규)
 -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 +121억원 (신규)
 - 아동안전지킴이 : +23억원 (32억원 → 55억원)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 +24억원 (신규)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26억원 (551억원 → 577억원)
 - 신종 전염병 대책 : +404억원 (664억원 → 1,068억원)

- 일자리 창출 : +677억원 (3.5조원 → 3.6조원)

1. 긴급복지 지원

복지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A)	최종(B)	증액(B-A)
긴급복지	51,532	153,312	52,912	57,912	5,000

1) 사업개요

-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상실을 겪는 위기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비 등을 최장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35백만원 (대도시 기준)
- 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평균 77.65%)

2) '10년 최종 예산

- 총지원물량 : ('09 본예산) 42,040건 → ('10정부안) 54,750건 → ('10최종) 59,450건
- 예산 : ('09 본예산) 515억원 → ('10정부안) 529억원 → ('10최종) 579억원

· '09 말 집행전망액 수준으로 증액(+50억원)

지원실적 (11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2,927	2,603	4,633	5,537	5,459	4,521	4,132	3,543	6,034	4,846	5,464	6,200

2.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복지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경로당 난방비 지원	-	-	-	41,065	41,065

1 '08 ~ '09년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에너지보조금 한시 지원
 - 기초수급자(88만)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8만), 2만원/월
 - 지원기간 : '08. 7월 ~ '09. 6월
 - 국고보조율 : 78.38%(평균)
 - 재원 : '08추경 884억원('08. 7 ~ 12월) / '09 본예산 903억원('09. 1 ~ 6월)
- 경로당 난방비 한시 지원('08추경) : 508억원
 - 56천개소, 38만원/월, 3개월('08. 10 ~ 12월), 보조율 78.38%

기초수급자 및 경로당 에너지 보조 규모

	'08추경	'09본예산
기초수급자	884억원 (6개월분)	903억원 (6개월분)
경로당	508억원 (3개월분)	-

2 '10년 최종 예산

- 전국 경로당 56천개소에 동절기 5개월간(1·2·3월, 11·12월) 난방비 30만원을 한시 지원
- '10년 예산 반영액 411억원
 - * 56천개소 × 5개월 × 30만원 × 서울20%/지방 50%

3.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복지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청소년미혼모	-	-	-	12,080	12,080

1 사업개요

- 미혼모의 자녀양육비·의료비, 학습바우처 등 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자활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2인 129만원), 14천가구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평균 73%)

2 '10년 최종 예산

- '10년 예산 : 121억원(9개월분) 반영
- 예산 반영내용
 - ① 검정고시학습바우처 (57백가구, 연 154만원) : 53억원
 - ② 자녀양육비 (21백가구, 월 10만원) : 18억원
 - ③ 자녀의료비 (21백가구, 월 24천원) : 4억원
 - ④ 자산형성지원 (88백가구, 월 5만~20만원*) : 41억원

* 기초수급자 5만원, 비기초수급자 20만원

- ⑤ 친자검사비 (3백가구, 1회 40만원) : 1억원
- ⑥ 제도설계 위한 연구용역비 : 3억원

4. 아동안전지킴이

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아동안전지킴이	3,200	3,200	3,200	5,500	2,300

1 사업개요

- 놀이터·공원·통학로 순찰, 비행청소년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월 30만원) 지원
 - (시행시기) '09년 ~
 - (배치인원) 지역당 10명(2인 1조 근무)
 - (근무시간) 주 5일, 1일 4시간(14~18시), 10개월
 - (수행기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전직경찰, 대한노인회)
 - (국고보조율) 100%

2 '10년 최종 예산

- 아동안전지킴이 인원 : 101개 지역, 1,010명 → 174개 지역, 1,740명
- 예산 : ('09본예산) 32억원 → ('10정부안) 32억원 → ('10최종) 55억원
 - 활동비 2,190백만원 = 73개지역 × 10명 × 10월 × 30만원/월

5.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신규)

복지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	-	-	2,400	2,400

1 사업개요

- 전문 간병인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기대효과 : i)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ii) 여성 위주의 간병 부담으로 인한 직장여성의 휴직·사직 방지 iii)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iv) 병원 인력 확충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

2 '10년 최종 예산

- 전문 간병인제도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 소요 24억원 반영
 -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수립·시행 예정
- 시범사업 참여 환자 간병비 : 19억원
 - 지원대상 병원 : 6개 병원, 9개 병실(6인실·4인실·2인실)
 - 지원대상 환자 : 1,080명
 - * 생업활동 필요 등으로 영가의 간병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계층
 - 간병비 지원단가 : 143만원/월/1인
 - * 간병인 : 324명(10개월 근무)
 - 재원분담 : 국가 30%, 건보공단 20%, 본인 50%
- 연구·조사 용역, 제도개선 등 사업비 : 5억원

6.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복지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지역아동센터 지원	35,937	45,727	55,100	57,685	2,585

1 사업개요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빈곤 등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동에게 보호·학습지도·상담·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09년 말 2,788개소
- (지원단가) 개소당 월평균 320만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 아동복지교사 파견(2,700명) : 인건비 월 103만원/인

2 '10년 최종 예산

■ '09년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시설에 장려금 26억원 추가 반영

- 상위 30% : 월 30만원 추가 지원
* 916개소 × 30만원 × 12월 × 48% = 1,583백만원
- 상위 31 ~ 50% : 월 20만원 추가 지원
* 870개소 × 20만원 × 12월 × 48% = 1,002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08년	'09본예산	'09추경	'10년
• 개소수	2,788개	2,788개	2,788개	3,273개
• 지원단가	월 220만원	월 220만원	월 320만원	월 320만원
• 예산	283억원	359억원	457억원	577억원

7. 신종 전염병 대책

(단위: 억원)

사업명	'09년 본예산	'10년		증액내역 (*'10년 정부안 대비)
		정부안	국회 확정	
계	94	664	1,068 (증 404)	• 일반회계 608 • 응급의료기금 339 • 건강증진기금 121
■ 항바이러스제 비축	14	550	550	•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 (정부안 유지)
■ 지역거점 의료기관 격리 진료실 설치	-	-	185	• 격리외래실 100개, 격리중환자실 30개 설치 등
■ 국가격리시설 확충	-	67	87	• 인천공항 1개소 → 부산항만 1개소 추가
■ 격리병상 확충	52	7	67	• 5개 시도 (광주·울산·경기 북부·충남·경북) 국가격리병상(25병상/개소당) 설치
■ 보건환경 연구원 BL3 실험실 설치	-	-	63	• 미설치 12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BL3 실험실 설치
■ 고위험병원체 연구검사실(BL4) 건립	-	-	39	• 고위험병원체 연구검사실(BL4)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
■ 민간의료기관 진단장비 지원	-	-	15	• 30개 지역거점 의료기관 유전자 진단장비 지원
■ 신종 전염병 감시체제 유지·운영 등	28	40	62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 2억원 → 17억원 • 신종 전염병 대응 R&D 지원 : 5억원 • 여수 검역센터 진단장비 지원 : 2억원

II. '10년 일자리 관련 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

- 일자리 예산규모 : 3.5조원 → 3.6조원 (+677억원)
 - 감액 : 9개 사업, △59억원 (디딤돌일자리 △57억원)
 - 증액 : 11개 사업, +736억원

- 일자리 창출규모 : 555천명 → 578천명 (+23천명)
 - 청년 : 82천명 → 88천명 (+6천명)
 - 학습보조 인턴교사, 미취업대졸생 학내채용 : +6.5천명(신설)
 - 직업안정기관 운영(고용서비스 인턴) : +0.5천명
 - 디딤돌일자리 창출 : △1천명
 - 중장년 : 292천명 → 294천명 (+2천명)
 - 주부 등 단시간일자리 지원 : +2천명(신설)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 +0.2천명(신설)
 - 고령층·장애인 : 180천명 → 195천명 (+15천명)
 -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아동안전지킴이 : +14.7천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 +0.3천명(신설)

(단위: 억원, 명)

사업명	'09년				'10년			
	본예산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직접일자리 계	27,354	404	47,073	801	35,166	555	35,843	578
• 청년층 (15~29세)	7,276	67	9,981	133	7,400	82	7,958	88
• 중장년층 (30~54세)	18,707	169	35,423	465	26,285	292	26,229	294
• 고령층· 장애인 (55세 이상)	1,370	167	1,669	203	1,481	180	1,656	195

8. 미취업 대졸생 학교 내 채용 (Stay-in-School)

복지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미취업 대졸생 조교 등 학교 내 채용 지원	-	32,340	-	7,920	7,920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0년 국고 한시지원
- 지원형태 : 국고 80%, 대학 20%
- 사업내용 : 경제위기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로 취업이 어려운 신규 대졸자를 대학 내 조교, 연구보조원, 인턴 등으로 채용
 - * '09추경 : 3,675명×110만원×10개월
 - (4년제대 : 전문대 = 6:4, 수도권 : 비수도권 = 4:6을 원칙)

2 '10년 최종 예산

-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종료 원칙이나, 청년층 고용여건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 지원
- 다만, 작년 추경사업이 금년 6월까지 추진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 추진 가능 물량(1,500명) 반영
 - * '10년 예산 : 1,500명 × 110만원 × 6개월 × 80% = 7,920백만원
 - * '09 추경예산(3,675명) 중 일부(1,400명)는 예산 이월집행을 통해 금년 상반기까지 지원

9.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학습보조 인턴 교사 채용지원	-	49,800	-	18,000	18,000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0년 국고 한시지원
- 지원형태 : 국고 50%, 특별교부금 50%

- 사업내용 :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 등을 위한 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예체능 강사 채용을 특별 한시지원

* '09년 추경 : 학습보조 인턴 16천명, 방과후학교 예체능 강사 10천명

② '10년 최종 예산

- 동 사업은 지방교육 재정으로 추진해야 하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선진화를 위해 특별 한시 국고지원

• '09년 추경으로 한시 지원한 사업을 6개월간 연장토록 지원

- 추경으로 지원한 인턴 16천명 중 5천명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추진

* 5,000명 × 6개월 × 120만원 × 50%(국고) = 18,000백만원

10.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

노동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A)	최종(B)	증액(B-A)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	16,783	35,017	19,206	24,284	5,078

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 계속
- 지원형태 : 국고 직접지원
- 사업내용 : 실직자 및 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턴 등 인건비 지원

② '10년 최종 예산

- 최근 청년층 고용여건 및 고용지원서비스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하여 고용지원센터 인턴을 추경수준으로 유지

* 인턴규모(명) : ('09 본예산) 460 → ('09 추경) 1,160 → ('10 정부안) 700 → ('10년 최종) 1,200(+500)

'10년 고용지원센터 인력 현황

구분	공무원	민간 상담원	인턴	비고
인원(명)	2,846	162	1,200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턴 500명 추가 반영

11. 노인일자리 확충

복지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A)	최종(B)	증액(B-A)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일자리 수)	131,368 (16만개)	159,128 (19.4만개)	140,305 (17만개)	151,605 (18.4만개)	11,300

① 사업개요

-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 일자리 유형
 - 공익형 : 문화재 해설 및 보호, 친환경하천정비, 숲생태 해설 등
 - 시장형 : 주유원, 가스충전원, 카드배송원, 환경관리용역 등
 - 지원 단가 및 기간 : 월 20만원, 7개월
 - 수행기관 : 시군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자체 50%

② '10년 최종 예산

- 노인일자리* 1.4만개 추가 반영

* ('09당초) 160천개 → ('09추경) 194천개 → ('10정부안) 170천개 → ('10확정) 184천개

12. 주부 등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 2,000개 창출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금	-	-	-	3,360	3,360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년도 신규
- 지원형태 : 국고 직접지원(한국노동연구원 위탁사업)
- 사업내용 : 고용관리, 조직문화,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지원

2 '10년 최종 예산

- 대상업종(예시) : 병원, 보육교사, 콜센터, 유통, 도서관, 박물관, 여성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
- 사업방식 : 공모(50여개 기업) → 단시간 근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당 15 ~ 30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수준 : 1인당 4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지원(1년)
 - 2천명 × 27만원(평균 지원단가) × 12월

13. 시각장애인 안마사 (신규)

복지부,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09년		'10년		
	예산	추경	정부안 (A)	최종 (B)	증액 (B-A)
시각장애인 안마사	-	-	-	2,376	2,376

1 사업개요

-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등에 시각장애인을 파견, 안마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지자체, 시각장애인협회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기대효과 : 노인복지 증진 및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2 '10년 최종 예산

-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명을 전국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파견
- 예산 : 24억원
 - 300명 × 월 110만원 × 50 ~ 70%(보조율)

장애인 일자리 현황

구분	'09년		'10년		비고
	예산	추경	정부안	국회 확정	
■ 일자리	5,500명	6,672명	6,620명	6,920명	
• 중증장애인 일자리	3,500명	4,172명	4,000명	4,000명	도서관 사서 보조, 주차 단속보조 등 *월 20만원
• 주민센터 보조	2,000명	2,500명	2,620명	2,620명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월 85만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	-	-	300명	안마서비스 제공 *월 110만원
■ 예산	136억원	158억원	180억원	204억원	

2010년 예산 배정계획 및 집행지침 확정, 통보

- 재정조기집행, 공공부문 에너지 10% 이상 절약, 예산집행실명제 등 -

* 본 자료는 2010년 1월 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발표한 「2010년 예산 배정계획 및 집행지침 확정, 통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예산배정

- 정부는 세출예산의 70%(178.3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4일(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일반+특별회계 (총계)

(단위: 억원)

구분	'10예산	1/4	2/4	3/4	4/4
• 금액	2,553,344	1,097,568	685,943	448,416	321,418
• 누적비율		43.0%	69.8%	87.4%	100.0%

- '10년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의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2009년과 유사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함
-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71.7%(164.0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

예산집행지침

-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1.4일(월)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임

-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예산 배정과 동시에 예산집행지침을 확정, 통보

* '08년 예산의 경우 '08. 1. 4 예산배정, '08. 1. 30 집행지침 통보

* '09년 예산의 경우 '08. 12. 16 예산배정, '08. 12. 30 집행지침 통보

- 이는 집행지침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의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 2010년 집행지침은 ①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②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③ 재정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

- (재정조기집행) '0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확대 등 기존 한시규정을 연장 적용하는 한편,

-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과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집행을 지양하는 등 낭비요인 최소화 방안 규정

•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감)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총리지시 2009-4호)의 관련내용을 반영

-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 자동차 등 정부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1~3등급)을 평가하여 인증

• (투명성 제고)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 말까지 도입하고

-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 (효율성 제고) 연도 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본경비 이월 범위를 100분의 5 →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 집행과정에서 남용 우려가 제기되었던 수입대체경비의 이·전용 금지 및 정보화 사업의 자체전용 제한 등 집행요건을 강화

- 부처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직비 상한(3만원)을 설정

-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건축부지 매입시 「先 국유지 활용, 後 민간토지 매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참고 1 연도별 예산배정 추이('98~'10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구분	예산 (일반+특별)	상반기						하반기	%
		계	%	1/4	%	2/4	%		
• 1998예산	126.1	65.9	52.2	31.3	24.8	34.5	27.4	59.8	47.4
• 1999예산	145.0	94.5	65.2	57.2	39.5	37.2	25.7	50.5	34.8
• 2000예산	154.3	93.2	60.4	52.5	34.0	40.7	26.4	61.1	39.6
• 2001예산	160.4	101.1	63.0	58.1	36.2	43.0	26.8	59.3	37.0
• 2002예산	174.0	113.7	65.4	68.8	39.6	44.9	25.8	60.3	34.6
• 2003예산	182.9	113.4	62.0	69.4	38.0	44.0	24.0	69.5	38.0
• 2004예산	186.0	118.6	63.7	73.9	39.7	44.7	24.0	67.4	36.3
• 2005예산	195.0	130.0	66.7	82.0	42.1	48.0	24.6	65.0	33.3
• 2006예산	202.1	125.6	62.2	77.2	38.2	48.4	23.9	76.5	37.8
• 2007예산	200.9	131.2	65.3	83.1	41.4	48.1	23.9	69.7	34.7
• 2008예산	219.9	137.3	62.4	83.5	38.0	53.8	24.4	82.6	37.6
• 2009예산	248.0	173.6	70.0	108.8	43.9	64.8	26.1	74.3	30.0
• 2010예산	255.3	178.4	69.8	109.8	43.0	68.6	26.8	76.9	30.2

참고 2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내용

중점 1 경기회복 공고회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 **(한시제도 연장)** '0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적용한 한시제도를 연장
 -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시설공사 발주·계약·심사 기간을 단축
 - 법정경비, 안전관련 경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권 부처 위임
 -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를 선교부
- **(제도개선)** 공모기간 단축 등 조기집행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과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정낭비 요인은 최소화

추가 제도개선

- 일자리 사업 공모기간 등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 i) 일자리 사업 공모기간 (평균 45일 → 30일 이내)
 - ii) 총사업비 사전검토 (30일 → 10일)
 - iii) 자치단체 공사 원가검토 (10일 → 7일)
 - iv) 예산 이·전용 등 변경협의(20일 → 10일)
-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관리를 강화
- 지자체 보조사업 등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행률을 재정지출 보조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관리·공개

낭비요인 최소화

- 공공요금, 급여성 사회복지 보조금 등을 단순집행을 제고를 위해 선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기에 집행하도록 규정

중점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

- **(절감목표 제시)** 에너지 소비 10% 이상 절감 목표제 실시
 -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등 에너지 소비관련 예산을 절감 집행
-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 에너지 절약형 공공청사 신축과 관리를 유도
 -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규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 및 절수형 수도설비 의무화
 - 에너지 절감형 공공청사 운영을 위해 적정 실내 온도 유지

* 적정실내온도 : 여름철 냉방 27℃ 이상, 겨울철 난방 19℃ 이하

- **(에너지 절약형 자산취득)** 정부자산 취득시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 우선 구매
 - 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구매
 - 사무기기 등 자산 신규 취득 및 교체시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을 우선 구매
 - 조명의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 LED 제품 우선구매
 - 업무용 승용차량은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을 50% 이상 구매

중점 3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주요 재정사업 예산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회계처리관련 전자결재 관리를 강화
 - 주요 재정사업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집행담당자 실명을 공개
 - 일반국민 및 기업지원예산, 대형국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 재정정보시스템(d-Brain)과 부처별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공개
 - 공인인증서 대여·양도 금지 및 전자결재 활성화로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보조사업 투명성 제고)** 미집행 보조금의 장기 이월을 방지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등 제고
 - (민간 보조사업) 총액으로 계상된 민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 보조사업 집행시 계약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용하고, 필요시 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지자체 보조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시 이자

반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미집행 장기 이월 방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중점 4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

- **(연말 예산낭비 예방)** 기본경비의 연도 말 이월범위를 기존 5/100에서 10/100으로 확대
- **(건축부지 매입 사전협의 신설)** 先국유재산 활용 後민간토지 매입을 위해 공공부문 건축부지 매입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규정
- **(집행요건 강화)** 재정집행단계에서의 예산절감 유도
 - (환차의) 환차의 사용요건을 재해대책비 및 법정경비로 한정
 - * (기존)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 (변경)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 (수입대체경비) 이·전용 금지 및 초과지출 승인액 집행시 세입 발생과 직접 연계된 세출사업에 한정하여 지출토록 규정
 - (정보화 사업) 남용방지를 위해 자체 전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개정
 - * (기존) 자체 전용 가능 → (변경)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당직비 상한설정) 부처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 및 과도한 당직비 지급 방지를 위해 당직비 상한을 설정
 - * (기존) 부처 자율 (1만~5만원) → (변경) 당직비 상한범위 내(3만원) 부처 자율
- (초과근무관리 강화) 초과근무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지양하

고, 부당수령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참고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 '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비목별 집행지침' 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

- **국가재정법 제44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80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집행 전반의 기준인 일반지침과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 일반지침은 예산배정 유보, 외화경비 집행 등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인건비·정보화예산·자치단체보조·운영비 등 사업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 감사 등에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본 자료는 2009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음
-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 ※ 국회심의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변동 규모 : 총 17,565억원('10년+5,841억원)

2009년도 각 세법별 주요 변경내용

1. 소득세법

- ①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현행)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분의 경우 2010년부터 33%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
 - * 공제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수준에 따라 80~5% 공제

- *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선)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2년간 유예
 - *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3%)

②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 (현행) 주택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전세임대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 (개선)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시행

③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④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 **(현행)** 사업자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개인 : 소득금액의 15%(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선)**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

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06) 0.9조원 → (07) 1.2조원 → (08) 0.9조원

- **(개선)**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 부동산 등을 '10. 12. 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 12. 31 이전인 토지를 '10. 12. 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부동산을 '10. 12. 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2. 법인세법

①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 (현행)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 10%
 -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20%
-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 대로 인하

②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 (현행) 일반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
- (개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 ('10. 1. 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 금융기관은 '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 부담 증가는 없음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 (현행) 지분율 2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제도

- (개선)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④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세제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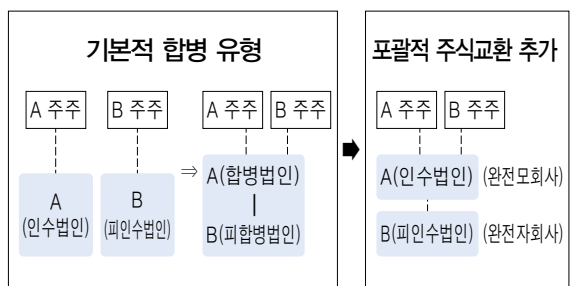
※ 준비기간 등을 감안 '10. 7. 1 이후 시행

◆ 민간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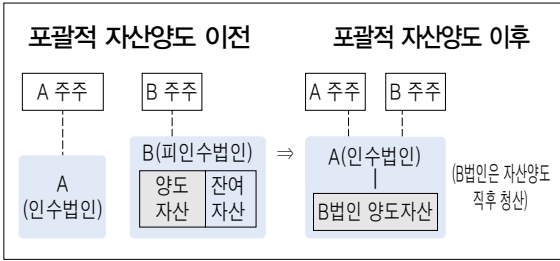
①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 적용

*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 이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 각 M&A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업이 적합한 M&A 유형의 선택이 가능해짐

* M&A 유형별 장점

- [합병] 시너지 효과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 [포괄적 주식 교환] 피인수기업의 면허 유지, 의무·책임의 승계 차단
- [포괄적 자산 양도] 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부외채무 등 미승계

② 현행 합병·분할(M&A)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

-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부분 과세이연)
-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 * (주주)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토록 함
- (사업)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1/2 이상을 일정 기간 보유토록 함

③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현행	변경
• 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 • 모든 자산에 적용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에 한정	⇒ • 증자시에도 적용

⑤ 기타 제도개선 사항

가. 해외투자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 이상 자회사에 한정)

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현행) 금년 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개선) 신용카드·직불카드 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 말까지 2년 연장)
- (공제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선불카드 : 20% → 25%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현행) '09년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선) 가입시한을 3년 연장('09년 말 → '12년 말) 하되 소득공제는 '09년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여 8,800만원 이하 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③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 연장

- **(현행)**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09년 말까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개선)**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10. 12. 31까지 1년 연장('09년 귀속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요건	
현행	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 사업용계좌 개설	⇒ 좌 동
직전 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 직전 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

④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 1년 연장

- **(현행)**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 (지원대상) 경차 1대 소유자(승용·승합 각각 적용)
 - (지원수준) 연간 10만원 한도
 - (적용기간) '08. 5. 1.~'09. 12. 31.
- **(개선)** 적용기간 1년 연장('10. 12. 31.까지)
 - (수정 이유) 경차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⑤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 녹색펀드 :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 녹색예금 :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녹색채권 :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현행)** 공익사업 수용시 '09. 12. 31까지 양도세를 감면
 - 감면율 :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만기보유 보상채권 30%)
 -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 **(개선)**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
 - 일몰 연장 : '09. 12. 31 → '12. 12. 31
 -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5년만기)
 -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한도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⑦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 적용요건
 -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 감면율 : 20% 세액감면
 - 일몰 : '12. 12. 31

⑧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 **(현행)**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금액①+② 세액공제

- ① (당기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10%(수도권과 밀역제권역 3%)
- ②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10%
- 일몰기한 : 2009. 12. 31

- (개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7%
 - ※ 증가분제도는 폐지
 - 일몰기한 연장 : 2010. 12. 31

⑨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현행)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아래 ①, ② 중 선택)
 -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3~6%(중소기업 25%)
 - ② 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40%(중소기업 50%)
- (개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안

	현행	일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대기업	R&D당기분(3~6%) or R&D 증가분×40%	⇒ 현행 유지	R&D당기분×20%
중소기업	R&D당기분×25% or R&D 증가분×50%	⇒ 현행 유지	R&D당기분×30%

⑩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 (현행) 농어업인이 '09. 12. 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개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12. 12. 31까지 3년 연장

⑪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 (현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09년 말까지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
 -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여 평가
- (개선)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0. 12. 31까지 1년 연장
 - 구조조정과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⑫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현행)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 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개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 이상 사용)을 '12.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물류시설의 범위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

13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 **(현행)**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일몰 : '09. 12. 31
 - 적용요건
 - 공장 수용 후 3년 이내 지방* 소재 공장을 대체취득할 것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개선)** 적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일몰을 연장
 - 일몰 연장 : '09. 12. 31 → '12. 12. 31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14 공모펀드·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 **(현행)**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09년 말 일몰)
- **(개선)** '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주식형 펀드가 활성화되어 당초 세제

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감안

* 주식형펀드 규모 : (06) 46,4조원 → (09,6) 137,1조원 : 295% 증가

15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 **(현행)**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허용
 -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 ▶ (재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및 일반 기부금
 - ▶ (사업)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Micro Credit(금융소외자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수행, 일반 Micro Credit 사업자 자금지원

- **(개선)**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16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행)** 현재는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 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 신청기간 : 2010. 1. 1. ~ 2011. 12. 31.

17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행)** 중고차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폐자원보다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고철 등 폐자원) 취득가액의 6/106, (중고차) 취득가액의 10/110

- **(개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18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리시 세액공제 조정

- **(현행)** 세무사가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함

* 납세자 1인당 4만원

- **(개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무사가 일부 세목만 대리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사의 세액공제를 허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만원, 부가가치세 : 1만원 (연간2만원)

4. 상속세및증여세법

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현행)**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 다만,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 **(개선)**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개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5.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 **(현행)**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

*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 **(개선)**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 **(현행)** 법인은 '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해야 하고 미전송시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개선)**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 다만, 법 시행 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교부일 익월 15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이후 : 0.3%

③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행) 유흥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점업에 포함되어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 8/108

- (개선)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④ 납부면제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

-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개선)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부면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

* 미등록공급가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

6. 개별소비세법

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개선)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 수준)에

대해 5% 세율로 '10. 4. 1.부터 '12. 12. 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② 목적세 본세통합 유예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재조정

- (현행)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본세(개별소비세) 통합을 전제로 개별소비세 세율을 개정하고 '10. 1. 1.부터 시행 예정

- (개선)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이 유예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개정된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

7. 증권거래세법

①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

- (현행) 파생상품의 거래(증권거래세) 및 소득(소득세)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금년에 입법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고,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②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주권 또는 지분이 아닌 ETF*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 **(개선)** 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에 대해 '12. 1. 1부터 낮은 세율(0.1%)의 증권거래세 과세
- 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 거래의 실질은 국내주식 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일반 세율의 1/3 수준인 0.1%의 세율로 '12. 1. 1부터 과세

8. 국세기본법

① 세무조사 법제화

-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한도를 설정
 -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 * 예외 :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 조사기간 연장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 *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의 승인, 2차 연장시에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
 - * 예외 :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가능
 -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 * 다만, 장부·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날인 요구 가능

※ (시행시기) 2010. 4. 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②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지방국세청·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둠
-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

③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08. 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중
 - 납부한도 : 200만원
 - 대상자 : 개인
 -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범위를 확대
 - 납부한도 : 500만원
 - 대상자 : 개인, 법인
 - 대상세목 : 모든 세목

④ 국세통계자료 제공 확대

- 국세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상임위가 세법 제·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를 제공

⑤ 납부기한연장 승인 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기한 10일 전 신청한 납부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 미통지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9. 국세징수법

①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 **(현행)** 체납세액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 → 가산금 → 국세」
- **(개선)**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으로 변경
 -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②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 **(현행)**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개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③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현행)**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처분을 요청
- **(개선)** 출국금지 요청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10. 조세범처벌법

①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 **(현행)**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 등에 상관없이 형량이 일률적이며, 법정형과 범인의 실제 선고형량 간 차이가 과도하게 커 법 실효성이 낮음

- **(개선)**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 기본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가중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형량가중 요건 : i 또는 ii일 때

(i)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ii)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②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현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소득탈루율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

율추이 : ('05년)56.9% → ('06년)49.7% → ('08년)45.1%

- **(개선)**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③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현실적으로 하수인은 엄벌(징역·벌금형+특가법상 가중처벌)에 처해지는 반면, 조세포탈의 최종 이익귀속자인 법인은 과소처벌*

* 법인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상 양벌규정만 적용되고, 이마저도 조세범처벌법 공

소시효가 특가법 공소시효인 10년(15년) 보다 단기인 5년이

어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곤란

- **(개선)**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 → 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④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 (현행) 오랜 기간 제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개선)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

* 관련규정 내용

- ① (§4 면세유 부정유통)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 목적 외 용도로 판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부과
- ② (§5 유사석유 제조)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부과
- ③ (§6 가짜주류 제조·판매) 무면허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⑤ 범죄유형 정비 및 형량 조정

-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 과다계상죄 등 범죄를 정비하고, 범죄유형 간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형량을 균등 조정

⑥ 법 체계의 정비

- 조문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등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에 노력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국가 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 (현행)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만 제공
- (개선)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여 역외탈세 방지

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개선

- 런던 G20정상회담('09. 4)에서 조세피난처, 역외 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함
-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외국의 금융정보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본사,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 자회사 금융거래정보 수집 필요

②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현행)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 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

- (개선)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09년 사업연도분('10년 신고)부터 적용

12. 인지세법

①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현행) 금융기관 대출시 2,000만원까지 인지세 비과세
- (개선)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② 과세문서의 조정

- **(현행)** 크게 14종의 문서에 인지세 과세
- **(개선)** 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③ 세액의 변경

- **(현행)**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콘도회원권양도증서는 각각 3천원, 1만원으로 단순정액 과세
- **(개선)** 재산가액에 따라 2만~35만원으로 차등과세

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종료('09. 12. 31)
- **(개선)** 시행기간 3년 연장('12. 12. 31.까지)
 - (수정 이유)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 연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기간도 3년 연장

14. 관세법

① 관세담보제도 개선

- **(현행)**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기업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담보를 받도록 함에 따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개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

② 관세형벌제도 개선

- **(현행)** 허위신고죄 등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따라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
 - 또한, 관세법상 형사미성년자·심신미약자·농아자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제한으로 과잉처벌되는 문제 발생

- **(개선)** 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 * 선박용품 무허가 하역·환적, 보세공장 반입물품 미신고 사용 등
 -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관세 예비범 형량을 1/2로 감경하여 과잉처벌을 방지

③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현행)** 설탕 기본관세율 : 40%p
- **(개선)**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 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도모

④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 **(현행)** 관세법에 희귀난치병 치료제의 관세감면 근거가 불명확
- **(개선)**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⑤ 재수입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 조정

- **(현행)** 수출물품의 사용 여부, 유무상 수입 여부 등을 고려함이 없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개선)** 재수입 면세대상을 수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재수입 되거나
 - 임대차·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에서 일시사용 또는 전시회 등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조정

를 야기하는 실질적 원인이 아닐 경우 「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15. FTA 관세특례법

① FTA 관세특례법 법률체계 정비

- **(현행)** FTA관세이행법률은 「한-칠레 FTA특례법」과 「FTA 특례법(한-싱, 한-아세안, 한-EFTA FTA)」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 협정별로 상이한 협정관세 신청절차·처벌조항 등으로 인한 집행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

- **(개선)** 「FTA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특례법」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
 - 한-칠레 FTA특례법은 폐지하되, 한-칠레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

* (예) 긴급관세조치 적용요건(국내시장 교란) 추가

②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의 제외 근거 도입

- **(현행)** 관세법 제65조에는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시 모든 국가에 대하여 피해 상당범위 내에서 세율인상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한-인도 CEPA 협정에는 일정 요건하에서 긴급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이행 근거 마련 필요
- **(개선)** 긴급관세 부과 제외 근거 도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예: 인도 등)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 1. 1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 稅路」도 정식 개통 -

* 본 자료는 2009년 12월 30일 국세청 전자세원과에서 발표한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 1. 1 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2010년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유리

-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 1.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함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임
-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 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개정(안) 요약 >

- ◇ 법인사업자는 2010년(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는 2011년(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
- ◇ 국세청 전송기한을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5일 연장
- ※ 동 개정안은 '09. 12.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세로」정식 개통

-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0. 1. 1일 정식 개통할 것임
- 그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성·유통(호환)성·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이에 맞추어 「e세로」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번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하였음
- 이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11. 2일~12. 18일)도 실시하였음
- 이 기간 동안 299,792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 발행연습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요청에 대하여 대부분을 수정·보완하였음
-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음

III ASP·ERP를 통한 발행방법도 있으며 메일을 통한 자료 호환 가능

- 「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이외에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75개(12. 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49개(12. 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ASP·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 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

스템 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

1.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구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종이	전자파일
인감 날인	실제 인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수신방법	직접 또는 우편 수신	이메일로 수신
자료보관 형태	종이로 보관	전자파일로 보관
자료 검색	수동 검색	조건검색 등 맞춤형 검색
합계표 작성 형식	개별명세 기재 필요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 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시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는 현행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3개월마다 발행하던 것이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 비교

구분	거래일(1. 1일~1. 31일)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	발행가능기한	전송기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이세금계산서	1. 31일	2. 10일	-	4. 25일
전자세금계산서	1. 31일	2. 10일	2. 15일	4. 25일

3. 「e세로」 회원가입 절차 및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 ① 인터넷 PC로 「e세로(www.esero.go.kr)」 접속
-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사업자 본인 확인
- ④ 회원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 ⑥ 공인인증서 관리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에서 등록버튼 클릭
- ⑦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화면 창에 나타나는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 총합계 금액만 조회 가능

4. 공인인증서 필요성과 사용 가능한 종류

- 공인인증서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및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와 국세청 전송시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
- 「e세로」에서는 「법인용·범용 공인인증서」와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용이나 증권용 등 용도가 다른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ASP 사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이 국세청에 이용가능 통보를 해야 사용 가능
 - * 공인인증서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 「이용안내/공인인증서 안내」참고

5. 「e세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절차

- ① 인터넷 PC로 「e세로(www.esero.go.kr)」 접속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발행·조회서비스 메뉴에서 건별발행 또는 일괄발행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후 발행 완료
 - * 일괄발행시에는 사전에 미리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을 엑셀로 작성한 서식 준비 필요
 - * 「e세로」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ASP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취소·반송이 불가능하며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6. 「e세로」의 발행서비스 특징

-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개별 또는 일괄가능) 또는 반복발행이나 복사발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쉽게 작성·발행 가능
- 동일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 업무 이용 가능

7. 「e세로」를 통한 발행내역 조회

- 「e세로」에서는 「e세로」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ASP·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 모두 조회 가능
- 「e세로」에서 발행한 분에 대한 건별조회는 즉시 가능하고, ASP·ERP를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전송 다음 날 조회 가능
- 「e세로」에서 발행한 분, ASP·ERP를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한 집계표는 다음 날 조회 가능

8. 세금계산서 집계표 작성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집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는 기재하지 않음
-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란에 집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 기재
- * 전자세금계산서의 출력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시와 함께 24자리의 승인번호가 있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 가능
- * 자세한 기재방법은 「e세로」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15번 참조

9. 시험운영 결과에 대한 조치

- 발행 또는 ASP·ERP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 삭제
- 회원가입 정보와 거래처 등록 정보, 자유게시판, 공지사항은 계속 유지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09년 성과기반, 건실 집행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

* 본 자료는 200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도 상반기 60%를 목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부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흡하고, 지역 서민들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 따라서, '09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각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특히, 지방재정이 서민생활, 중소기업 등 지역 현장경제와 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적극적인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은 지난 12. 18(금)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09년도 조기집행을 담당할 지방 공무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 이를 통해, 사전에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둘째,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중점 관리토록 하였다.
 - 셋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
 - 넷째, 금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계약절차 단축·간소화 등 각종 집행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사항은 실효성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당분간 연장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첫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차보전 대책을 시행하고, 그 지원규모를 금년도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한다.
- 둘째,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되, 지방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금년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지표도 개선하고자 한다.
- 아울러,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재정통계 |



- 전화세 예산 및 징수
- 인지세 예산 및 징수
- 방위세 예산 및 징수
- 농어촌특별세 예산 및 징수

1. 전화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부과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B/A)	(C/A)
1974	6,603	5,261	5,344	5,261	-	-	79.7	79.7
1975	10,663	9,764	9,950	9,764	-	-	91.6	91.6
1976	14,926	13,829	13,815	13,829	-	-	92.7	92.7
1977	18,648	20,328	20,328	20,328	-	-	109	109
1978	25,220	22,921	22,922	22,920	1	-	90.9	90.9
1979	35,002	30,973	30,972	30,972	-	-	88.5	88.5
1980	48,197	49,997	49,996	49,996	1	1	103.7	103.7
1981	73,055	66,741	66,739	66,739	1	1	91.4	91.4
1982	107,029	101,580	101,575	101,573	5	2	94.9	94.9
1983	114,580	123,796	123,777	123,775	17	4	108	108
1984	145,112	153,994	153,933	153,936	54	4	106.1	106.1
1985	173,869	166,647	166,548	166,551	85	11	95.8	95.8
1986	201,520	195,578	195,461	195,463	107	7	97.1	97
1987	213,814	235,843	235,733	235,737	104	2	110.3	110.3
1988	244,739	283,603	283,462	283,462	123	18	115.9	115.8
1989	235,281	237,601	237,437	237,437	154	10	101	100.9
1990	234,413	261,661	261,519	261,522	135	4	111.6	111.6
1991	340,572	311,510	311,035	311,387	93	30	91.5	91.4
1992	352,020	360,507	360,428	360,431	66	10	102.4	102.4
1993	414,267	399,824	404,938	399,722	83	19	96.5	96.5
1994	459,800	458,824	467,771	458,696	117	11	99.8	99.8
1995	467,400	543,177	543,046	543,051	121	5	116.2	116.2
1996	588,800	661,130	661,012	661,012	114	4	112.3	112.3
1997	749,800	788,645	788,673	788,624	21	-	105.2	105.2
1998	921,900	921,909	922,228	921,887	18	4	100	100
1999	1,092,038	1,191,457	1,191,471	1,191,414	36	7	109.1	109.1
2000	1,391,800	1,458,208	1,458,104	1,458,176	19	13	104.8	104.8
2001	1,302,700	1,346,243	1,344,577	1,346,195	29	19	103.3	103.3
2002	-	17,932	17,845	17,845	70	17	-	-
2003	-	1,426	1,359	1,361	55	10	-	-
2004	-	584	581	581	3	-	-	-
2005	-	-299	-	-299	-	-	-	-
2006	-	542	-	542	-	-	-	-
2007	-	26	-	26	-	-	-	-
2008	-	16	-	16	-	-	-	-

주: 전화세는 2001. 9. 1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인지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부과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746	738	11	738	-	-	98.9	98.9
1966	1,485	1,775	22	1,775	-	-	119.5	119.5
1967	1,672	2,312	19	2,312	-	-	138.3	138.3
1968	2,560	2,677	17	2,677	-	-	104.6	104.6
1969	2,962	14	13	14	-	-	0.5	0.5
1970	3,260	11	11	11	-	-	0.3	0.3
1971	3,909	2,400	9	2,400	-	-	61.4	61.4
1972	7,649	7,855	32	7,855	-	-	102.7	102.7
1973	6,090	8,294	58	8,293	-	1	136.2	136.2
1974	9,149	13,709	56	13,709	-	-	149.8	149.8
1975	12,920	12,772	54	12,772	-	-	98.9	98.9
1976	14,101	14,603	57	14,603	-	-	103.6	103.6
1977	16,599	19,328	98	19,328	-	-	116.4	116.4
1978	18,425	24,897	69	24,897	-	-	135.1	135.1
1979	41,736	37,319	784	37,317	-	2	89.4	89.4
1980	28,794	33,890	353	33,890	-	-	117.7	117.7
1981	30,378	49,679	577	49,678	-	1	163.5	163.5
1982	54,964	54,228	867	54,227	-	1	98.7	98.7
1983	59,086	64,212	1,127	64,212	-	-	108.7	108.7
1984	68,791	68,840	1,026	68,840	-	-	100.1	100.1
1985	77,312	75,670	917	75,670	-	-	97.9	97.9
1986	80,617	83,529	88,534	83,529	-	-	103.6	103.6
1987	89,801	99,772	974	99,772	-	-	111.1	111.1
1988	106,017	120,692	120,692	120,692	-	-	113.8	113.8
1989	126,631	162,306	162,305	162,305	-	1	128.2	128.2
1990	174,968	193,077	193,077	193,077	-	-	110.3	110.3
1991	244,458	224,223	224,223	224,223	-	-	91.7	91.7
1992	259,553	214,983	214,961	214,983	-	-	82.8	82.8
1993	275,552	242,623	242,658	242,619	-	4	88	88
1994	259,700	275,300	275,300	275,300	-	-	106	106
1995	318,500	319,831	319,829	319,829	-	2	100.4	100.4
1996	357,700	355,970	355,970	355,970	-	-	98.3	98.3
1997	396,900	390,107	390,105	390,105	-	-	481.7	124.6
1998	304,300	303,590	302,954	303,533	12	45	99.8	99.7
1999	353,874	371,026	369,588	370,929	41	56	104.8	104.8
2000	428,400	387,587	386,137	387,560	1	26	90.5	90.5
2001	374,400	476,830	474,975	476,559	12	159	127.3	127.3
2002	458,400	482,213	477,031	482,179	2	32	105.2	105.2
2003	545,500	456,533	453,086	456,513	7	13	98	97.5
2004	479,800	436,037	433,610	435,828	2	207	90.9	90.8
2005	494,300	499,987	502,600	499,962	1	24	101.2	101.1
2006	496,300	587,962	589,332	587,901	7	54	118.5	118.5
2007	596,600	587,989	579,966	587,969	14	6	98.6	98.6
2008	627,900	572,905	571,640	572,888	8	9	91.2	91.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방위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B/A)	(C/A)
1975	31,634	32,155	31,900	22	233	101.6	100.8
1976	154,261	181,852	179,353	668	1,830	117.9	116.3
1977	211,659	231,155	224,039	1,590	5,526	109.2	105.8
1978	270,401	316,785	308,778	1,892	6,115	117.2	114.2
1979	404,381	414,336	402,524	1,718	10,095	102.5	99.5
1980	504,221	561,760	541,935	3,208	16,616	111.4	107.5
1981	643,455	756,160	712,024	5,715	38,421	117.5	110.7
1982	-	840,875	766,160	18,793	55,922	-	-
1983	-	926,902	838,999	30,496	57,408	-	-
1984	-	1,076,953	982,714	22,543	71,696	-	-
1985	-	1,240,603	1,123,505	44,744	72,355	-	-
1986	-	1,379,690	1,262,637	46,879	70,173	-	-
1987	1,406,323	1,714,941	1,592,614	49,732	72,595	121.9	113.2
1988	1,699,575	2,192,621	2,031,307	44,824	116,490	129	119.5
1989	1,935,152	2,629,536	2,446,178	48,590	134,768	135.9	126.4
1990	2,759,932	3,222,176	3,026,308	50,483	145,385	116.7	109.7
1991	1,286,389	1,576,630	1,364,126	33,909	178,595	122.6	106
1992	62,186	395,755	182,919	49,234	163,602	636.4	294.1
1993	100,491	318,424	121,258	66,381	130,785	316.9	120.7
1994	53,500	221,945	75,227	70,764	75,954	414.9	140.6
1995	33,100	170,459	62,008	44,134	64,317	515	187.3
1996	33,000	93,095	13,633	34,141	45,321	282.1	41.3
1997	4,400	25,767	△9,278	7,285	27,760	585.6	-
1998	△100	25,781	1,268	4,125	20,388	-	-
1999	△104	18,751	1,552	3,901	13,298	-	-
2000	-	8,901	△3,008	5,601	6,308	-	-
2001	-	4,190	△1,035	1,941	3,284	-	-
2002	-	6,170	730	710	4,730	-	-
2003	-	4,854	2,198	1,318	1,338	-	-
2004	-	61,956	57,051	3,665	1,240	-	-
2005	-	-7,792	-8,591	75	724	-	-
2006	-	1,054	806	84	164	-	-
2007	-	527	304	98	125	-	-
2008	-	404	294	43	67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농어촌특별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부과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B/A)	(C/A)
1994	236,200	169,901	-	169,509	-	392	71.9	71.8
1995	1,141,600	945,341	-	939,859	1,303	4,179	82.8	82.3
1996	1,097,500	1,045,622	-	1,035,643	2,864	7,115	95.3	94.4
1997	811,300	579,241	-	556,360	4,502	18,379	71.4	68.6
1998	569,200	610,360	-	585,341	6,098	18,921	107.2	102.8
1999	566,400	1,553,757	-	1,529,670	5,603	18,484	274.3	270.1
2000	934,200	1,325,070	-	1,296,316	3,694	25,060	141.8	138.8
2001	1,764,800	951,122	-	928,029	4,414	18,679	53.9	52.6
2002	1,146,400	1,385,909	-	1,379,104	1,766	5,039	120.9	120.3
2003	1,281,200	1,169,072	-	1,163,482	1,375	4,215	91.2	90.8
2004	1,332,700	1,294,774	-	1,289,033	1,256	4,485	97.2	96.7
2005	1,637,800	1,755,119	1,820,923	1,748,764	1,371	4,984	107.2	106.8
2006	1,826,900	2,046,912	2,135,632	2,038,881	2,579	5,452	112	111.6
2007	2,457,000	2,832,741	3,010,005	2,819,498	4,801	8,442	115.3	114.8
2008	2,596,500	2,813,246	2,443,562	2,757,180	8,752	47,314	108.3	106.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입투공제 일몰, '반쪽짜리 연장'

시행령 개정 안 돼 올 투자분 공제 못 받을판
입법예고 등 완전 개정까지 한 달 이상 걸릴 듯

입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입투공제) 일몰 연장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입투공제 일몰은 완벽하게 연장되지 않았다. 아직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투자분에 한해 입투공제 일몰을 1년 간 연장하는 조특례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는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고만 정해져 있을 뿐 어디에도 일몰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입투공제 일몰은 정확히 관련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현재 시행령에 입투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로 정해져 있다. 공포된 법안과 현재의 시행령만으로는 2010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입투공제가 불가능한 셈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시행령으로 올해 초부터 공제가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행령은 이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관련 법률안이 공포됐다"며 "가능한 빨리 시행령을 개

정하겠으나 입법예고 등 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말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포함하면 관련 시행령은 이달 말이나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투자는 입투공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입투공제 일몰이 그대로 끝날 수도 있다. 다만 국회에서 입투공제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고 관련 법도 입투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투자분도 입투공제를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법이 투자가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며 "시행령만 개정돼 시행되면 입투공제를 해주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각종 세법도 현재 시행령 없이 법만 공포돼 시행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2010년 1월 5일자)

[새해 시론] 새 도약 준비하는 한국 경제

〈기고〉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라는 기쁜 소식과 함

계 밝은 2010년 새해의 우리 경제는 매우 희망찬 모습이다.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400억달러를 훨씬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며 가계소비·기업투자 등 제반 지표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있고 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 달러 등 주요 통화가치의 급변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 경제는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심각한 경기침체를 빠르게 극복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 민간경제 주체 역할 강화해야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신속·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고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비중,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재정 의존성이 심화됐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어떤 재정운영 기조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야 할까. 우선 국내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에 여전히 많은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기저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아직도 확장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단계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민간경제 주체들의 역할도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의 국가채무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해외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정책을 단기적 출구전략보다는 중기적 재정개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구체적 정책대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새해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 가계소비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현안이자 사회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 과제다. 기업의 투자확대, 특히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등 많은 과제를 추진하는 데 조세·재정 지원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 부문의 선진화·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재정운용의 또 다른 초점은 기업투자나 근로의욕, 가계소비 등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 세율 인하로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각종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춘 신속한 법인세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

◆ 일자리 창출·성장잠재력 확충을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으로 세제의 친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투자·창업활동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이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러나 확대된 정부재정의 역할이 민간경제의 재정 의존성을 고착시키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 2010년 1월 4일자)

[테마진단] 준예산은 대안이 아니다

〈기고〉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헌법상의 시한은 넘긴 지 오래다. 1960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운용한 적이 없는 준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편성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54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집행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다.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국한된다. 즉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러나 준예산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에 준(準) 하는' 경비의 규모, 대상, 성격 등이 분명하지 않다. 헌법 규정 외에 준예산 집행을 전제로 구체화된 하위 법령 규정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때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법에는 예산에 대해서만 준예산 규정이 있고, 2010년 예산안 총지출의 30.5%를 차지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에서 초래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정부 재정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도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비록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의 경제회복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고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들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보호

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데, 준예산을 운영한다면 필요한 사업들을 제때에 신속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등 신규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종 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급성 전염병 의심환자 국가격리시설 건립, 사이버 테러 예방대책 등도 중단될 것이다. 또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층 일자리, 가사·간병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이 줄어들 등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 진행중인 각종 사업들도 법령에 근거한 의무적 지출에 한해 전년 수준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나 국도 건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공기가 연장되거나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뚜렷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이 되는 예산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대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을 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준예산 운용이 가져올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려는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당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매일경제 2009년 12월 12일자)

정부 “IFRS 도입대비 법개정 본격 추진”

조세연구원 토론회... “세법 개정 안 하면 기업부담 증가”

정부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법인세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FRS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며 “일반회계기준이 연내 확정되면 법인세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IFR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한해 의무적으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IFRS를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이 기준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행 일반회계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연내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주 정책관은 “대부분 기업이 적용대상인 일반회계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IFRS와 일반회계기준을 함께 놓고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현재로선 정부가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정한 것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태섭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교수)은 이날 조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IFRS 도입 시 세법 변화가 없다면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교수는 구체적으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처럼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항목의 경우 IFRS 체계에서는 비용으로 계상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거래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토록 하는 기능통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법인세법에 필요하고, 역으로 IFRS에는 정형화된 재무제표 형식이 없어 세법 개정을 통해 표준재무제표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자산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토록 한 종래 회계기준과 달리 IFRS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했지만 이 경우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재고자산법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 불인정 ▲유형자산의 상이한 감가상각 인정 ▲무형자산의 범위 확대 ▲신종자본증권의 부채·자본 판단 기준 마련 등도 법인세법 개정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분류했다.

그는 “현재 IFRS 규정은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법인세법 규정도 매년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년 12월 22일〉

재정포럼

2010년 1월호 통권 제16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1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호(통권 제16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